

# INVENTION & PATENT

2012 January

# 01

## 2012년 신년사

이수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INVENTION & PATENT \_ Vol . 426



## Column

2011년 세계 특허 전쟁 결산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2012년 IP 경영, 담론을 넘어선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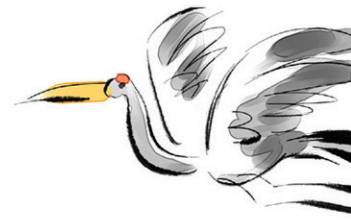




# 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가 CO<sub>2</sub>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 壬辰年에는 하늘로 용솨음치는 흑룡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수원  
특허청장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흑룡의 해인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밤을 낮 삼아 발명에 혼신의 힘을 쏟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미국 등 통상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역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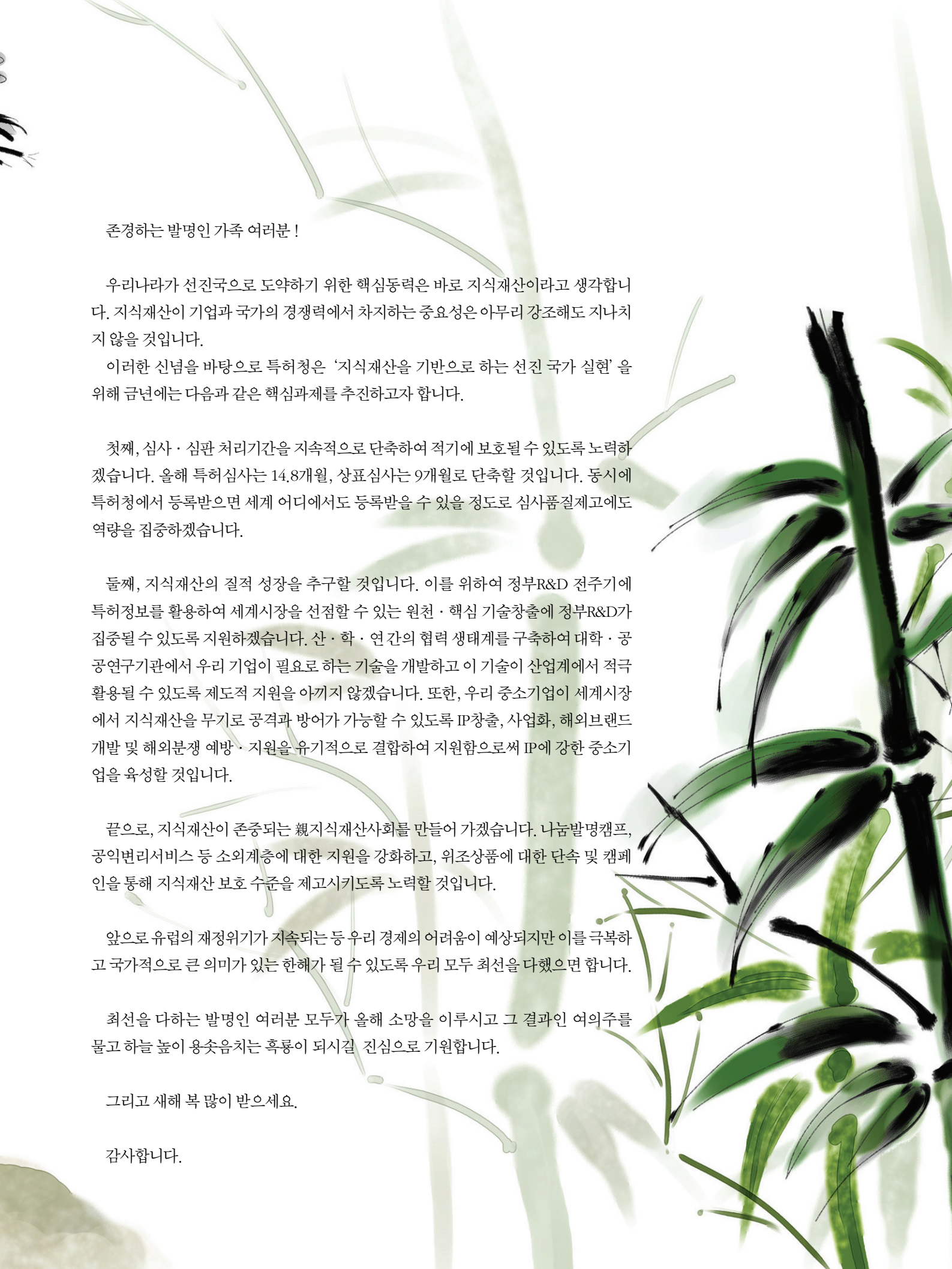
가발, 오징어를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발명인 여러분들이 발명과 창의로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여러분의 발명이 신속히 권리화 될 수 있도록 93명의 심사관을 충원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R&D에 IP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R&D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과 심사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손쉽게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상표·디자인 분야에서는 기존 미국, 유럽, 일본 중심의 3극 체제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상표분야 TM4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발명인 여러분의 진심어린 격려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동력은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해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특허심사는 14.8개월, 상표심사는 9개월로 단축할 것입니다. 동시에 특허청에서 등록받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등록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사품질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R&D 전주기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핵심 기술창출에 정부R&D가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간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학·공공연구기관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식재산을 무기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IP창출, 사업화, 해외브랜드 개발 및 해외분쟁 예방·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IP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親지식재산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눔발명캠프, 공익변리서비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및 캠페인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발명인 여러분 모두가 올해 소망을 이루시고 그 결과인 여의주를 물고 하늘 높이 용솨음치는 흑룡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임진년에는 흑룡의 용트림과 같은 힘찬 기운 속에 승천할 수 있기를...



김 광 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하는 일 모두 이뤄내시고, 큰 보람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1년은 그동안 보여주신 발명특허 가족여러분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낸 한해이자 발명의 앞날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해로 기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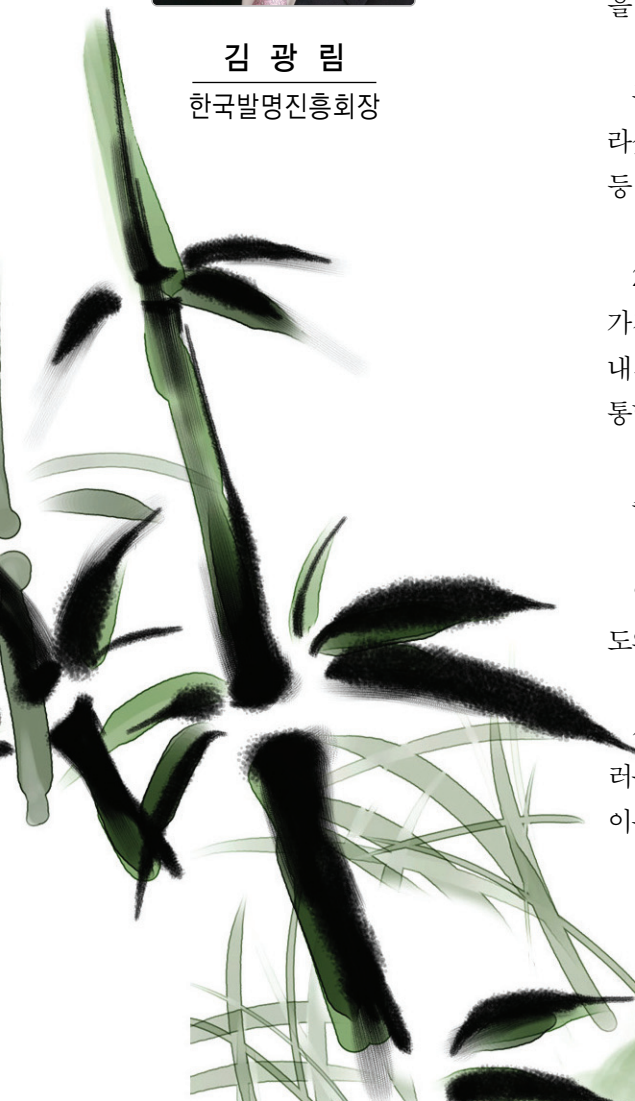
특허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00만 건 특허 보유국으로 올라섰고, 특허심사 처리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미국(25.7개월), 일본(28.7개월) 등 특허 선진국보다 더욱 신속한 특허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2011년 7월에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이어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을 내건 제1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의결돼 지식재산정책이 범국가적으로 통합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임진년 새해,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름 그대로 발명인 여러분들 곁에서 발명을 도와드리고 발명품의 사업화를 진흥시키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특허기술자동평가시스템을 통해 발명인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술의 시장성, 권리성 등에 대한 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연구소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기업으로 이전시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자-기업' 간 연계사업('11년 150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이 지식재산전문가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격자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지난해 100만 수료생을 배출하며 국내 최대 지식재산 포털로 자리 잡은 온라인(e-리닝) 교육사업도 발명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과 발명가족 여러분께 더욱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중소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7개 광역센터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을 만들어내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聖

<성스러울 성>

먼저 듣고 <귀> 耳 <입구> 口 나중에 말할

壬

일에 입할때는, <입할 임>

사랑하는 발명인 여러분!

한국발명진흥회 임직원들은

새해, 새 일에 임(壬)할 때

먼저 듣고(耳) 나중에 말하는(口)

'성스러울 성' (聖)의 자세를 가슴에 새기며

발명인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또한, 發明立國·發明保國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지식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흑룡의 용트림과 같은 힘찬 기운 속에 역동적인 변화의 물길을 타고 승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명특허가족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특허법률사무소 M&A 컨설팅

**특허법률사업을 인수, 합병을 원하시거나  
정리, 양도를 원하시는 특허법률사무소는  
M&A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귀소를 적극 돕겠습니다.**

## M&A 필요성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이로 인해 머지않아 특허법률 업계도 대형화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특허법률업계도 미리 외국특허법률사무소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규모와 조직력, 자본력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M&A가 필요한 사무소

- 합리적인 조건으로 타특허법률사무소를 인수, 합병하여 중, 대형 특허법률사무소로 성장하고 싶으신 특허법률사무소
- 좋은 조건으로 귀 특허법률사무소를 다른 큰 사무소에 합병시켜 안정적으로 특허법률업무를 하고 싶으신 소형 특허법률사무소
- 여러 소형 특허법률사무소끼리 연합하여 관리비를 줄이면서 외형의 규모는 키우고 내부에서는 각자 특허법률 업무를 평온히 영위하고 싶으신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률사무소를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특허법률사무소
- 생활에 여유는 있지만 연세가 들어서도 계속 특허법률사무소에 출근하시면서 적은 비용으로 동료 변리사들과 함께 특허법률사무소를 꾸려가고 싶으신 특허법률사무소

##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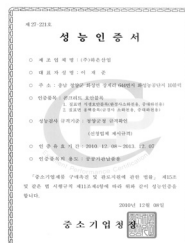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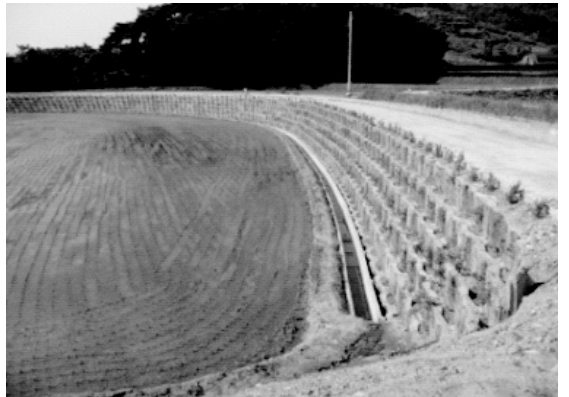
한국지식재산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psmc.com>) 접속하신 후 신청서 작성  
문의 : 이메일 [counsel@kipsmc.com](mailto:counsel@kipsmc.com) / 전화 02-501-5475 (팩스 02-501-5479)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벚짚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 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벚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 11건
- ◎ 실용신안: 벚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 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 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 3건



##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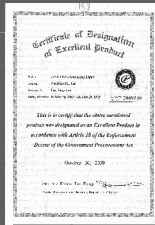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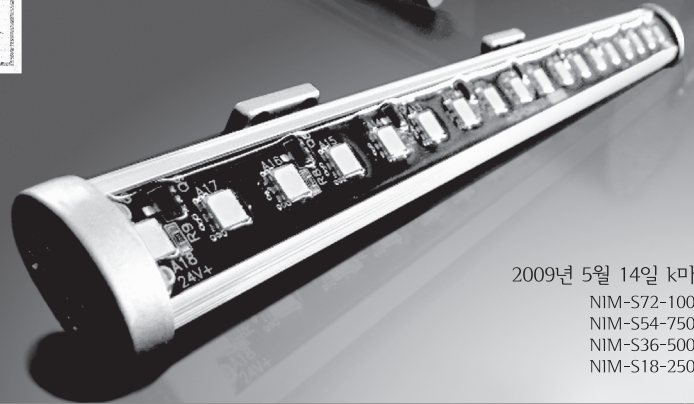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CD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LED 조명등(NIM-CS1.5W-A)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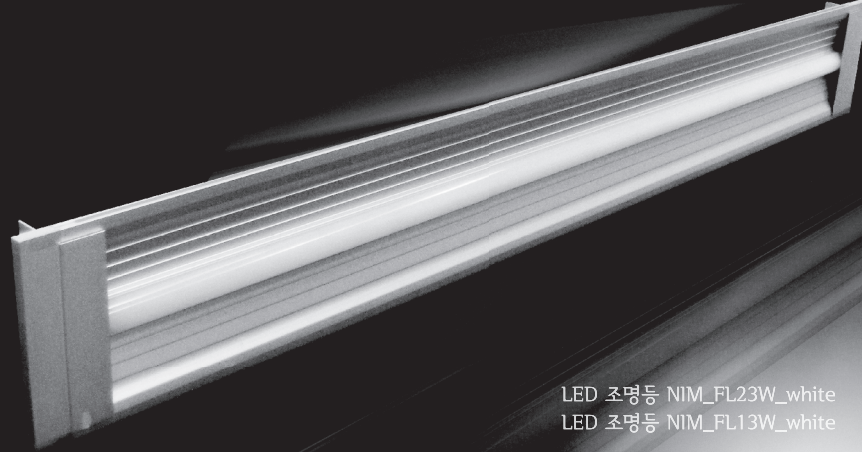
##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 ECO FRIENDLY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www.nuriplan.com

(137-84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누리플랜 B/D  
 TEL) 02,2679,4100 FAX) 02,3660,4276

**KOSDAQ**  
 코스닥 상장법인

# Column

2011년 세계 특허 전쟁 결산

2012년 IP 경영, 담론을 넘어선 시선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홍보의 중요성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의 특허 전략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성장하는 조직의 비밀, '학습'

Column

## 2011년 세계 특허 전쟁 결산



유성원  
知心 IP&Company 대표변리사

2011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전 세계 특허 전쟁터가 가장 뜨겁게 달아 올랐던 한 해였다. 특히, 삼성과 애플의 자존심을 건 특허 공방전은 전 세계 법정을 무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됐으며, 많은 사람들은 현존 세계 최고의 양대 IT 기업의 진검승부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뉴스 기사를 보며 흥미롭게 관전했었다. 지금도 삼성과 애플의 팽팽한 일진일퇴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어느 한쪽도 조금의 물러섬 없이 날 선 칼을 서로에게 겨누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 워낙 치열했기에 다른 기업들의 특허 전쟁 소식은 다소 뜸한 것처럼 느껴졌으나, 2011년은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특허 공방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였다. 특히,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소송 뿐만 아니라, 소위 특허 괴물로도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sup>1)</sup>들의 특허 소송 및 라이선싱 활동은 역사상 가장 활발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허가 단순히 경쟁사의 모방을 막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인식되던 수준에서 벗어나, 특허 자체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기업들의 특허 확보 경쟁 및 특허 수익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었다. 특히,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및 애플의 노텔 특허 매입은 특허 확보 경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삼성·애플의 특허 전쟁을 비롯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뜨거웠던, 2011년 전 세계 특허 전쟁의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결산해보고자 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중국 등을 무대로 기업의 사활을 건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터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살펴해보도록 하자.

## Apple vs 삼성전자 - 특허 세계 대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싸움은 누가 먼저 어디서 시작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독일의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서 가처분 명령 조치를 받으면서 뉴스가 크게 났었기에 독일에서 제일 먼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디자인 관련 특허 침해로 애플이 삼성을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삼성은 같은 달 4월에 바로 맞제소를 하였고, 그 이후 분쟁은 우리나라, 독일,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었다.

날짜	주체	내용
2011. 4.15	애플 → 삼성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 제소 (디자인특허침해)
4.21	삼성 → 애플	서울중앙지법, 독일, 일본 등에서 애플 제소 (통신표준특허침해)
4.27	삼성 →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 제소 (통신관련 특허)
6.16	애플 → 삼성	서울중앙지법, 일본, 독일, 네덜란드법원에서 삼성 제소
6.28	삼성 → 애플	미국 ITC <sup>2)</sup> 에 통신 기술 특허 침해로 애플 제소, 수입금지 신청
6.29	삼성 → 애플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애플 제소
7.5	애플 → 삼성	미국 ITC에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신청
7.20	삼성 → 애플	네덜란드에서 맞제소
7.28	애플 → 삼성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4	애플 → 삼성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8.9	독일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 결정(뒤셀도르프)
8.24	네덜란드법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갤럭시 S 등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8.29	삼성 → 애플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9.9	독일법원	독일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9.16	삼성 → 애플	호주에 아이폰, 아이패드 통신기술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 제기
10.5	삼성 → 애플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0.13	호주법원	호주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10.13	네덜란드법원	네덜란드법원, 삼성전자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10.13	미국법원	애플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
11.11	독일법원	애플의 FRAND <sup>3)</sup> 조항 주장 배척
11.30	호주법원	삼성전자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 인정

〈삼성-애플 분쟁 일지〉

현재까지, 삼성과 애플은 9개국, 12개 법정에서 24건의 소송으로 맞붙고 있다. 지금까지의 양상은 삼성과 애플이 서로 한방씩 주고 받았고, 일진일퇴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반에는 애플이 판매금지가처분을 잇달아 성공시키면서 삼성과의 싸움에서 우세를 점하는 듯싶었으나, 삼성이 호주 및 독일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면서 향후 전망은 삼성 쪽으로 좀 더 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절대적인 특허의 양 및 축적된 특허의 파워 면에서 삼성에 많은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애플은 몇 건의 디자인 특허 및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 1) 생산/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R&D 활동이나 특허 매입 등을 통하여 특허를 확보하고, 확보된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 침해 대상 기업에게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또는 소송을 걸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기업.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ニュ앙스로 불리우기도 함.
- 2)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지적재산권의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 금지 조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관세법 제1337조(이하 "Section 337"이라 칭함)는 수입시 지적재산권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ITC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한다. ITC가 Section 337 위반이라 판정하면일반적으로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정한 경우 압류조치를 행한다. ITC는 Section 337 조사를 수행한 후 대통령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대통령은 ITC 결정통지 수령 후 60일 내에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상기 기간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결정을 추진하는 경우 ITC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동 결정은 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같이 취급되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3)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을 의미한다. 프랜드 조건에 따르면 필수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술의 경우 미리 사용하고 제품을 개발한 특허를 소유한 업체와 이후 협상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산업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를 활용하여 삼성을 상당한 곤경에 빠뜨렸다. 삼성은 그에 반해 다년간 특허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기업으로서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보다는 통신 기술 관련 특허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애플에 비해 매우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애플과의 싸움에서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싸움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삼성의 통신 관련 기술 특허들이 빛을 발할 전망이다. 또한,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면서 함께 얻은 통신기술 관련 특허들이 삼성을 후방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플은 2012년부터 날 선 법정 공방보다는 삼성과의 합의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입장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애플 이외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Rambus vs 하이닉스 - 11년을 끌어온 소송의 승리

2011년은 하이닉스에 있어서 진정 파란만장한 한 해였다. 무려 11년이나 끌어온 미국의 반도체 분야 NPE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올 연말 극적으로 SK텔레콤이라는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램버스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NPE로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생산활동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하여 특허를 만들어내고 이 특허를 통하여 소송을 걸거나 라이선스 활동을 하여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연구개발형 NPE 중의 하나이다.

1990년 중반, 반도체 업계가 모여 SDRAM 기술을 표

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램버스는 중도에 이탈하여 RDRAM(Rambus DRAM)이라는 독자적인 메모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2000년에 램버스는 전 세계 반도체업계를 대상으로 SDRAM 표준 기술이 자사의 RDRAM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로열티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하이닉스는 오히려 램버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램버스는 하이닉스를 특허침해로 맞제소하였고,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하이닉스는 램버스에 패소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램버스에 배상할 것을 판결받는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항소 끝에 램버스가 증거자료를 위법하게 파기한 것을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에 침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 약, 5,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 배상을 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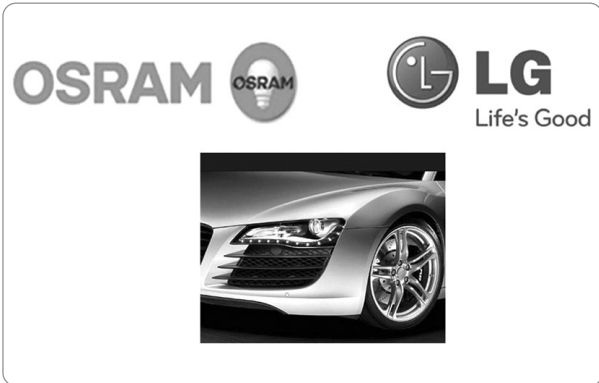
한편, 램버스는 2004년 특허소송과는 별도로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지멘스, 삼성전자 등이 담합행위를 하여 39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보았다고 반독점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만약 여기서 패한다면 하이닉스 등은 최대 120억 달러 정도의 손해 배상(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treble damage<sup>4)</sup>)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인피니온, 지멘스 등은 발 빠르게 램버스와 합의를 하였지만,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고, 항소 끝에 지난 2011년 11월 하이닉스가 승소하게 되어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이날, 램버스의 주가는 무려 78% 정도가 폭락하여 하루 만에 시가총액 3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조 5천억 원)이 사라졌다.

## Osram vs LG -

### LED 판 삼성 - 애플 특허전쟁

오스람과 LG전자(LG이노텍)의 특허 전쟁은 “LED판 삼성·애플 전”이라고 불리운다. 오스람과 LG전자는 현재

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7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ED 분야 역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경쟁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견제가 매우 심한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LED 분야 최강자는 필립스와 오스람 등인데, 필립스는 작년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오스람은 LG전자를 상대로 올해 6월부터 7건의 특허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필립스, 오스람, 크리, 줌토벨 등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LED 업체를 견제하기 위하여 서로 특허 공유 협약을 맺고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선,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자동차 헤드램프에 쓰이는 LED 조명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오스람을 제소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의 오스람이 공급하는 LED 헤드라이트 램프를 장착하고 있는 독일의 명차 브랜드 BMW, 아우디를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여 오스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만약, 오스람이 공급하는 LED 헤드라이트 램프가 LG전자와 LG이노텍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한국 내에서 BMW 및

아우디가 판매금지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특허업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IT전문가들은 1990년대가 MS의 시대였다면, 2000대 중반까지는 Google의 시대였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은 Apple의 시대라고 한다.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PC 시대의 OS 및 오피스 프로그램의 절대강자 MS는 그 화려했던 권좌를 구글과 애플에게 내주면서 MS의 위상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MS가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OS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MS의 쇠퇴가 확인해지고 있던 2010년 무렵, MS는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세상을 향해 일갈하듯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대표하는 단말기 업체인 HTC에 대하여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서게 된다.

MS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OS 분야의 막강한 특허포트



4) 실제 발생한 손해 만큼만 배상하는 보전적 손해배상이 원칙인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은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더하여 의도적,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willful infringement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treble damage를 부과한다.

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안드로이드 역시 모바일 운영체제라는 점에서 MS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그물망을 피해나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TC는 옛 황제의 뿔난 일갈에 곧바로 협상에 돌입하여 스마트폰 1대당 5달러, 총 1억 5천만 달러(HTC 수익의 23%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아직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힘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MS는 2011년 삼성전자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제품에 대하여 1대당 15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하였다. 삼성전자 역시 곧바로 MS와 합의에 들어갔으며 실제 얼마에 합의가 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MS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제품에 대하여 로열티 지급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현재까지 총 7개사와 특허로열티 협상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MS는 자신의 특허 저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모바일용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할 하드웨어 제조사들과의 협력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로서도 모든 주력 제품이 안드로이드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을 이를 계기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MS의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약 4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Oracle vs Google -

오라클은 2009년 4월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1억 달러에 인수했다. 인수와 동시에 오라클은 썬의 모든 JAVA 기술 관련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2010년, 구글의 안드로이드 탑재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자 오라클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글의 소프트웨어 개발 킷과 달빅(Dalvik) 가상머신이 자사의 JAVA 기술 특허 7



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6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1년 9월, 법원 양사의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구글은 오라클의 손해배상 요구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크며 1억 달러 이상은 줄 수 없고 하여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소하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측이 물게 되는 손해배상 및 로열티는 고스란히 안드로이드 진영의 원가에 반영될 것이고, 이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오라클이 승소하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폰 1대당 10달러 내외의 로열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SONY vs LG전자 -

소니와 LG의 특허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뻔 했으나 사령부의 발 빠른 휴전 협상으로 인하여 1년이 채 안되어 마무리된 케이스이다.

201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12월 29일, 소니는 LG전자가 자사의 LCD 기술과 휴대폰 관련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LG전자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 LG도 이에 질세라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011년 2월 24일,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 및 신호처리 기

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ITC 및 캘리포니



아 남부지방 법원에 소니를 제소한 것이다.

LG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럽에서도 발 빠르게 소니를 압박해 나갔는데, 소니의 주력 게임기 상품인 ‘플레이스테이션3’ 제품에 대하여 유럽 판매금지 가치분을 신청하여 유럽세관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 수십만 대를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압류는 네덜란드 법원이 소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곧 풀리게 되었다.

두 회사는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2011년 8월에 전격적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큰 전쟁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특히, 소니와의 싸움에서 LG는 1990년대에 인수했던 미국의 제니스 사의 디지털 TV 원천 기술 특허 및 신호처리 기술 특허를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LG는 특허를 자사의 R&D 결과로 획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M&A, 특허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특허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1년은 몇몇 굵직한 특허 분쟁들만 살펴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특허 전쟁이 치열했던 한 해였다. 앞서 살펴본 사례 외에도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애플의 노텔 특허 포트폴리오 인수, 세계 1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2위 업체인 중국의

ZTE中兴 간의 특허 소송, 애플의 로열티 지급으로 마무리된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 분쟁, 서울반도체와 필립스의 LED 특허 전쟁 등 수많은 특허 소송/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NPE들의 특허 공세도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한 해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허전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특허 분쟁 건수는 2004년 41건에서 2009년 125건으로 연평균 25% 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제소하는 사건보다는 피소를 당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2004년에서 2011년까지 우리 기업의 제소비율은 26.5%)<sup>5)</sup>, 아직도 특허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은 다른 어떤 기업 전략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2011년의 특허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극적이고 방어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대응이 특허 전쟁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단순히 특허를 시장 방어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무기로써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여겨진다. 2012년에는 특허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의 승전보가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5)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제공 자료 참조

## 2012년 IP 경영, 담론을 넘어선 시선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자 연은 어김없이 우리를 견뎌준다. 태양은 다시 뜨고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을 맞이하여 또 다시 꿈을 꾸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또 한 해가 밝으면 뭐든지 낙관하고 싶어진다. 만사가 관대하다. 그저 새해 첫날, 첫달처럼 그저 복을 주고 복을 받기만 한다면 인생사와 세상사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다소 무겁고 논쟁적인 글을 여기에 쓴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여기 쓴다. 많은 전문가들이 IP 경영의 중요성을 이곳 저곳에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양상한 주장들이 반복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마치 좋은 특허만 확보하면 성공은 보장된 듯이 말하는 환상 유포식 주장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작금의 대기업처럼만 하면 IP 경영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해롭다. 어떤 이는 단순히 특허건수로 경쟁력을 비교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밤낮없이 통계자료를 만들거나 분석하기 바쁘고, 또 어떤 이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주장한다. 이들의 수고로움이 모두 틀렸다는 게 아니다. 너무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소위 '특허경영' 이니 'IP 경영' 이니 하는 전문적인 담론이 유행처럼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자면 때때로 허무하기까지 하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통계적으로 보자면 특허경영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될 일' 이다. 특허동향도 검색하곤 하는 기업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는가? 단순히 좀더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라는 정도의 답변이라면 'IP 경영' 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좀더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용을 더 쓰면 되는 일이다. 도대체 왜 IP 경영이 중요한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되었고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맥락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P 경영에 대한 이제까지의 개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체득되어 온 담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그 의문이 바로 이 글이 시작된 배경이다.

## IP 경영이란 무엇인가?

### 지식재산경영과 지식경영

이러테면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무리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IP 경영'을 주창한다. IP 경영이란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이며, 우리 말로 말하자면 '지식재산경영' 혹은 '지적재산경영'을 뜻한다. 특허청을 위시로 한 관료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Intellectual Property'를 '지식재산'으로 번역하기로 약속했고 그런 약속에 따르면 '지식재산경영' 정도가 되겠다. 법령을 통해서 '지식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함과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그런 약속은 확실하게 밑줄이 그어졌다. 하지만 '지식재산경영'이라는 용어를 선뜻 사용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Knowledge Management'에서 유래된 '지식경영'과의 혼동 혹은 관계성이 그것이다. 노나카 야쿠지로의 '불확실한 경제체제하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우위를 지속시켜주는 확실한 원천이 지식(Knowledge)'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식과 기업전략을 논설하였다. '지식재산경영'이든 '지식경영'이든 기업경영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의미하며 모두 무형의 '지(知)'에 기초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식재산경영'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축적과 활용을 보다 염두에 두고 있음에 비해서 '지식경영'은 조직 내부에서 지식의 창조, 전파, 관리라

는 스펙트럼에 주된 관심을 둔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서로 얽혀 있는 셈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서로 씨실과 날실로 직조되어 있음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Intellectual'과 'Knowledge' 모두 '지식'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고 있어서 이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선이 간다. 하지만 '지식재산경영'을 'IP 경영'이라는 용어로 약칭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식경영'과의 관계가 은폐되기도 한다. 편의상 여기에서도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를 'IP 경영'으로 약칭한다.

### 담론의 함정

그런데 도대체 'IP 경영'이란 무엇인가?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매뉴얼 I」은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화를 통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확산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부터 비롯되는 담론은 매우 불충분하다. 이것은 마치 'IP 경영'이 곧 '특허전략'인 것처럼 이해된다. 더욱이 이런 개념의 IP 경영이란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R&D 활동의 성과가 나오기 이전의 수두룩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에서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 또한 IP 경영이 단지 기업의 R&D 전략의 서술어 역할을 할 뿐이라는 오해를 낳기 쉽다. 오해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통찰력을 잃는다. 한편 지식재산경영포털(www.ipp.or.kr)에서는 IP 경영을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이것도 사실상 결과론적이고 비좁은 담

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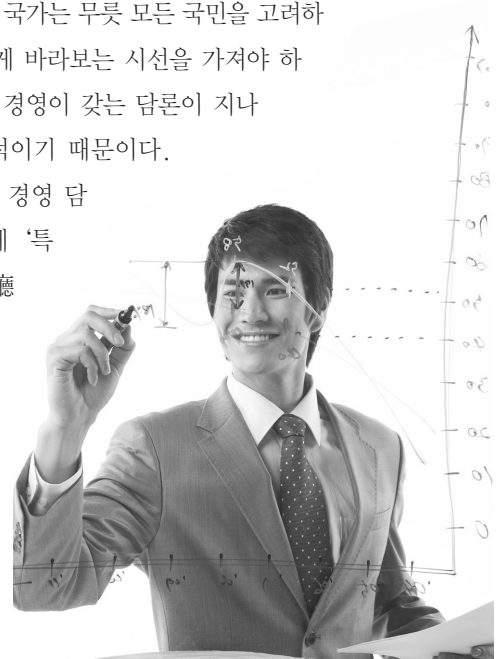
만일 IP 경영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말면 IP 경영이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차지하기 어려워진다. 수많은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도산하는 기업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 있다. IP 경영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면 이런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일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사람이 투자되는 일이다. 경험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선도기업은 후발기업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지식재산을 보유하며 게다가 더욱 전략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IP 경영 담론에 따르자면, 대기업이 혹은 선도기업이 더욱 가치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장밋빛을 낳는다. 즉 그 담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후발주자가 선도기업을 추격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 퍼즐을 제공할 뿐이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IP 경영의 개념이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너무 축소시킨다는 점에 있다. 여기 기업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있다. 먼저 기업의 문제를 살펴보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기업이 있고 수만명을 고용한 대기업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기업이 존재한다. 저마다 표정이 있고 고민이 있으며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너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종래의 개념은 이러한 기업의 다양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지식재산'이라는 결과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기 두 가지 진술이 있다. 하나는 'IP 경영은 특허청이 주관해서 잘 하면 된다'이다. 다른 하나는 'IP 경영은 국가적인 문제로서 다수의 국가 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진술이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진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전자라면 적어도 국가의 측면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개념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산하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립은 다소 엉뚱한 접근이 되고 만다.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IP 경영을 다르게 정의해야 하며, 그 작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는 무릇 모든 국민을 고려하면서 넓고 길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법인데 IP 경영이 갖는 담론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IP 경영 담론은 지나치게 '특허청적(特許廳的)'이다. 특허청의 역할과 지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담론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IP 경영 담론은 지나치게 '특허청적(特許廳的)'이다.

특허청의 역할과 지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담론을 넓힐 필요가 있다.



## IP 경영의 알맞은 개념을 찾기 위한 여정

### (1) 비즈니스 전략 (Business Strategy)

IP 경영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실제로 IP 경영의 주체가 기업이기도 하다. 요컨대 목적과 계획의 짜임새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세계는 하나의 생태계다. 비즈니스 그 자체는 시간의 함수이고 공간의 함수이다. 특정 시점에서 기업은 현것을 버리고 새판을 짠다. 어떤 전략은 '여기'에서는 유용하지만 '저쪽'에서는 해롭다. 세계가 변화하면 비즈니스도 그 변화에 순응하거나 탑승한다. 그런데 지식재산이라는 것도 이와 같

이 시간의 함수이고 공간의 함수여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멸하고 어떤 지점에 이르러야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비즈니스 전략은 처음을 고려하고 끝을 생각한다. 우리가 IP 경영을 ‘비즈니스 전략’으로 사고할 때 기업의 총체적인 활동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지 R&D의 부산물이라거나 취득한 권리라는 결과물이 아닌 기업경영의 처음과 끝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비즈니스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전략’이 IP 경영 개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멋진 혁신활동이라거나 아무리 좋은 특허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점이 없다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향성을 잃게 마련이다.

## (2) 창의성 (Creativity)

특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은 어떤 활동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라면 마땅히 원인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인풋(input)이 있어야 아웃풋(output)이 생긴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합리성이다. 그런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모종의 함수가 있고, 이 함수터널을 인풋이 통과해야만 아웃풋이 된다. 즉 방정식이다. 특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렇게 4개의 지식재산을 놓고 보자면 4차 방정식쯤 되는 셈이다. 하지만 수학과 달리 인간세계에서의 방정식은 훨씬 더 복잡하고, 게다가 방정식의 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 방정식의 인풋이 무엇이고 이 함수는 무엇인가? 그 인풋이 바로 ‘창의성(creativity)’이다. 그러니까 다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창의성이 입력되어서야 비로소 지식재산이라는 출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다. 어떤 기술에 대한 R&D 함수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창의성을 입력하여 특허라는 해를 구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에 따라 R&D 함수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함수는 ‘디

자인 사고’,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매니지먼트’, ‘예술창작’ 등의 함수처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IP 경영을 R&D 활동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비즈니스에서의 무수하고 다양한 함수 중에서 R&D 함수만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마땅하지 못하다. 예컨대 유통, 중개,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처럼 세상에는 R&D 활동이 중요하지 않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도 창의성을 중시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 IP 경영은 함수 이전에 인풋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 (3) 사람 (Human)

사람이 창의성을 낳는다. 이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매우 단순한 진리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IP 경영에 있어 가장 간과되고 오랫동안 시선 밖에 놓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사람이 하며, 혁신도 사람이 한다. 비즈니스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투자되는 개인의 창의성과 그 과정에서 획득되는 기업의 지(知)는 자동동체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기업이 도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몇 가지 사무적인 일이 남겠지만, 결국 사람이 남는다. 창의성과 지식은 사람이 갖고 사회가 갖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거나 동참하게 된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법적으로 말하자면 기업 자체도 ‘법인’으로서 법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지면서 인격을 획득하지만 법제도에서만 그렇지 실상은 모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비즈니스도 조직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여러 활동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낳는 사람이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창의성을 내어놓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야말로 IP 경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을 전제로 삼고 있다. 사람이 창의성을 낳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 (4) 활동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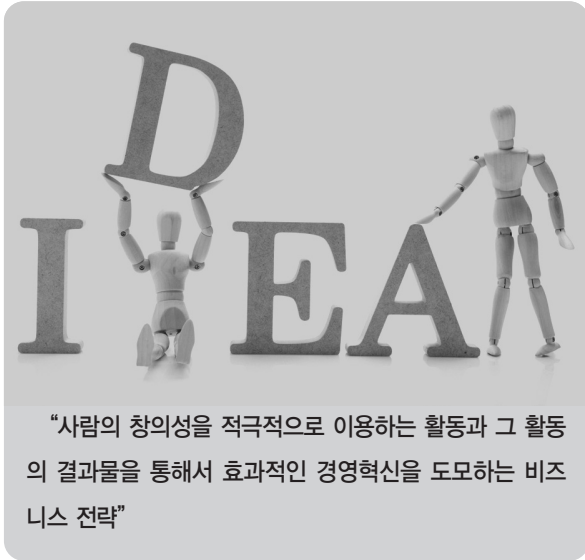
앞서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 자체가 시간의 함수이고 공간의 함수여서 어떤 ‘결과물’은 상당히 제한적인 힘만을 발휘하고 한시적인 생명을 부여 받을 뿐이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강한 특허라도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다. 비즈니스가 죽으면 특허도 함께 죽는다. 우리가 IP 경영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러므로 활동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창의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이어서 ‘결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아이디어는 창의성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이 기초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면 제안될수록 더 많은 창의적인 에너지가 모인다. 그럴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감스럽게도 제안된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남고 대부분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다. 어떤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위험함에도 때로 그것이 간과되고 채택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빛을 놓는 일이 되기도 한다. 성공을 꿈꾸고 비즈니스의 흥함만을 보고 싶은 마음이야 어디에서든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까지 포함해서 IP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사람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되 실패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가 아니라 ‘활동’이 시야에 들어온다. 더 많은 창의성을 얻기 위한 활동, 실패를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한 활동,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 IP 경영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특허’가 아닌 ‘특허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특허전쟁」 제8장을 참고하길 바란다) ‘활동의 긍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데 요행을 바라는 경영이 아닐 수 없다. 비즈니스에서는 물론 ‘요행’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도박’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 (5) 혁신 (Innovation)

시장경제의 속성상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국가에 많은 빛을 쬐다. 꼭 스펀터와 같은 오래된 학자를 호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혁신을 하지 않는 순간 위험해진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IP 경영은 ‘혁신’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특히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허제도 — 모든 특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 혁신 이론에 닿아 있다. 물론 제품에 외관에 관한 디자인, 브랜드, 저작권도 과연 혁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혁신은 R&D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혁신이 아니라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경영의 혁신을 의미하는 까닭에 지식재산은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 혁신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된다. 혁신은 IP 경영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위와 같은 ‘비즈니스 전략’, ‘창의성’, ‘사람’, ‘활동’, ‘혁신’이라는 다섯 가지 낱말을 열셋말로 생각해서 이를 가지고 의미의 퍼즐을 맞추면 우리는 IP 경영을 다음과 같이 일용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전략”

우리가 이렇게 IP 경영을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확장할 수 있고 종전의 IP 경영 담론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세계와 요구가 드러난다.

### 우리나라 IP 경영, 그 안팎의 경계선에서

IP 경영을 둘러싼 종래의 담론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념 정의를 위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물론 사건에 불과하다. 단지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 마중물을 붓는 의미일 뿐 “사람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전략” 이어서 아직 담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리창을 바라보면 새로운 눈빛을 느낄 수 있다. 이 유리창이야말로 우리나라 IP 경영의 안팎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외로운 경계선에 낀 성예를 바라본다. 이것을 닮을지 말지, 아니면 여기에 그림이라도 그려볼지는 온전히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IP 경영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 마디의 말로 솔직하고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시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가 듣고 주장했던 IP 경영의 대강은 “기술경쟁에 뒤쳐

지지 않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특허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각종 통계와 사례가 붙고 여러 가지 전략이니 특허전쟁이니 하는 수식어가 추가되며 전문적인 법리가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IP 경영의 대강은 저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오늘날 많은 기업이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경쟁에 스스로 뒤지기를 바라는 기업은 없다. R&D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WIPO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용 순위는 세계 선두권이다) 게다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는 게 아니다.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이며, R&D 비용대비 특허출원건수로 통계를 축약하면 세계 1위의 위용을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양’ 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점잖게 말한다. 도대체 특허의 ‘양’과 ‘질’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말이며 그 구별의 실익은 무엇일까? 이 구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시장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특허는 기술이 아니라 문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특허문헌을 일일이 들여다 보지 않고서는 양과 ‘질’은 구별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런 구별은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의해 몇 해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는 것이어서 그저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전략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IP 경영은 “기술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특허를 확보하자”라는 이 한 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와 같은 IP 경영이라면 특허전담부서가 잘 마련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전문가들의 조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물론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전문가에게 참으로 다행이다. 아직 전문가의 역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대기업 흉내내기’를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컨대 특허전담부서는 IP 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의 필요성은 기업 규모와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 대학, 국책연구기관, 공공단체 등의 특허전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 그들 대부분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겠으나 — 도대체 IP 경영이 무엇인지 자문해봄직하다. ‘특허전략’과 ‘IP 경영전략’의 차이는 무엇이며, 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업의 혁신과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의 상관성은 또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야말로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문하는 전문가의 시야자체가 좁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이 갖는 함의는 법률, 기술, 경영을 하나로 융합한다는 데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융합을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넓고 깊은 시야가 필요하다. 통섭과 통찰은 이 분야의 미덕이다. 오늘날 IP 경영의 한복판에 있는 전문가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기울기는 어떠한가?

하지만 우리나라 IP 경영의 현재를 논할 때 가장 아픈 부분은 따로 있다. 모든 지식재산의 출발점이 결국은 인간의 창의성임에도 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소속된 조직의 문제이다. 기업 내부의 사람과 조직 문제는 전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달려 있어서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면 경영자가 두 귀를 닫을 우려가 있다. 어쩌면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로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IP 경영에 입각한 컨설팅은 노사관계의 모든 문제를 화두로 삼는 게 아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개 경영자에게도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IP 경영은 ‘기업혁신을 위한 근원적인 에너지인 인간의 창의성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로 던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길은 단수가 아니다. 길은 많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기업이 저마다의 고유성과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창의성을 복원하고 융성하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기업 내에 일하는 노동자(상당수가 엔지니어가 되겠지만)의 소속감과 열정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기업 내부에서의 경제적인 조건이나 합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인류의 지난한 역사에서 그런 요소가 두드러진 힘을 발휘한 것은 불과 200년도 되지 않는다. 마치 좋은 대학을 나온 우월한 인재들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 창의성이 생기고 혁신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좀더 복잡한 존재다. 이 복잡성이야말로 IP 경영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인간 정신활동의 일면은 이성적이지만 다른 일면은 감성적이며, 이들의 상호작용 가운데 ‘창의성’의 생태계가 있다. 창의성 생태계의 보존은 때때로 임금과 복지수준 만큼이나 중요하고 열정과 소속감을 지속시켜 준다. 이점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전문가들의 실천 중에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IP 전략전문가 지원사업’은 괄목할 만하다. 우선 IP 경영의 시선을 넓혔다.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에 국한했던 관심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즈니스’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결합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분야의 일단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지나치게 법률에 편중시켜 왔다. 그들은 스스로를 법조인처럼 여긴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의뢰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나 보다 넓은 시각의 경영컨설팅을 할 준비가 되지는 못했다. 다른 전문가 집단이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경영이론과 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부정확한 법률지식 때문에 날개

를 펴지 못한다. 법률지식은 부정확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법률이나 경영보다는 기술 쪽으로 편향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도 저도 아닌 전문가들도 있다. 어쨌든 ‘협업’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IP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 다행히 민간 IP 전략전문가 지원사업은 이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협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점에서도 유의미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갖 것들로 가득한 매뉴얼(표준 IP 경영컨설팅 모듈)에 있다. 이 매뉴얼의 주된 내용으로 ‘IP경영진단모듈’과 ‘IP경영컨설팅모듈’이라는 게 있다. 실로 어떤 기업에 IP 경영 컨설팅을 제공함에 있어 회사경영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분석하고 또 치밀하게 컨설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다. 훌륭하다. 하지만 매뉴얼은 사람의 상상력을 죽인다. 그것이야말로 매뉴얼의 치명적인 뒷인데, 매뉴얼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욱 치명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제품에 대한 매뉴얼도 점점 더 단순화되는 세상에서 제품이 아닌 ‘사람의 집단 활동’에 대해서 그와 같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얼마나 유용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무릇 컨설턴트는 매뉴얼을 좋아한다. 매뉴얼을 보고 일을 하는 것만큼 쉽고 비생산적인 일은 드물다. 매뉴얼은 훌륭하지만 이를 단순 적용하려는 컨설턴트의 능력이 문제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매뉴얼은 그런 점까지 고려하는 법이다.

## 담론을 넘어선 시선

### 기술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오늘날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함에 있어서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 왔다. 하지만 ‘기술’이 비즈니스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술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훌륭한 기술을 갖고도 도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변변치 않은 기술에도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 있다. 우수한 기술로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일본기업의 위세는 크게 꺾인 상태다.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업 간, 국가 간 기술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기술이란 인류의 모든 성과에 빛을 지며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것 역시 인류에 공여되는 측면이 있다. 논문, 학술자료, 서적, 인터넷상의 정보, 특허문헌, 제품 등에 의해서 기술은 유통되고 그 결과 기술의 격차는 갈수록 작아진다. 어떤 근원적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접근에서 비롯되는 혁신은 드물다. 오히려 혁신은 과거의 모든 인류의 성과를 어떻게 참조하고 이용하며 개선할 것인지 여부에 비롯된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졌다. 아이팟,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일련의 성공한 애플 제품들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런 점에서 기술만을 생각하고 기술의 중요성만을 부각하려는 입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는 다른 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격변하는 세계사와 인문학적 통찰

세상의 변화는 매우 극심하고 불안정하며 시장은 급류처럼 흘러간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실물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20세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으로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를 극복한 인류에게 지구는 또 다른 시련 어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인류는 특히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급하게 답해야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복잡 다난한 금융의 문제, 격차의 문제, 산업사회에서의 소외의 문제, 탐욕과 갈등과 위화감 등의 인간 정체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세계에서 '판단'을 해야 하며 '행동'을 해야 한다. 아무리 불황기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기획해야 하고 '판매'해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선각자들은 중세의 혼돈과 암흑으로부터 새로운 활기와 답변을 찾기 위해서 거의 1500~200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갔다. 과거에서 답을 찾는 행위는 현세의 인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과거와 현세의 인류가 힘을 모아 해결한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슬기로운일지도 모른다. 그런 슬기로운이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의 비즈니스를 구원하려는 노력이다. 새로운 르네상스는 전문화와 분업화 일로에 있던 세계를 다시 통섭, 통찰, 협업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이는 바로 목전에 있다. IP 경영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기초하고 있고, 그 성격 자체가 상이한 영역(법률, 기술, 경영)들의 통합에 있는 까닭에 이러한 제2의 르네상스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분야 전문가들은 모든 변명을 유보하고 인문학적인 통찰을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 통섭의 맥락에서의 IP 경영

그러므로 우리가 IP 경영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해

야 한다. 전문서적을 들추는 것만으로는 세계사와 인간 행동의 행간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우리가 IP 경영을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화를 통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확산함으로써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담론으로 가두면 실무적으로는 단위 기업 조직만을 들여다 보게 되고 기술분야만을 각종 그래프로 표현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십상이다. 세상은 하나의 세계로 더 밀접하게 묶였다. 그에 따라 세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비즈니스는 넓어졌다.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비좁은 데이터에만 연연하는 것은 현자의 뉘이 아니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IP 경영의 본질을 확장하면 IP 경영 자체가 인간학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넓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기술과 예술을 연결할 수 있으며, 심리학과 문화인류학을 경영혁신의 요소로 포섭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만나고 SNS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은 이전과 달리 비약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이미 기술에 대한 정보는 일부 전문가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생산자의 의도된 기획에 의해 소비자가 행동함으로써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요구에 생산자가 행동하는 세계로의 전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가적 혹은 글로벌 관점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의 강조도 경영혁신의 요소로 점검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통섭의 시대이다. 특히 '디자인'과 '수사학'은 IP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통섭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디자인'은 광범위한 리서치와 소통을 기초로 하여 기술에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

학'은 마케팅에서든 권리화에서든 기술을 더욱 확장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한편 지식재산기본법 제1조는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곧 지식재산 자체가 통섭을 지향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협업의 맥락하에서의 IP 경영

이와 같이 IP 경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힘으로써 우리는 IP 경영을 다른 여러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다. 당연하게도 모종의 협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IP 경영을 통한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증진을 생각할 때, 기술전문가, 변리사, R&D 관련 전문가와 컨설턴트, 이 분야 몇몇 교수와 공무원에만 이 과업을 맡기는 것보다 여러 이종의 전문가와 협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다. 이를테면 문화인류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 디자이너 등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시장과 기업 내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R&D의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에만 대학의 능력을 국한시키지 않고 인문학적 자원을 이용한 비즈니스 협업을 대학의 IP 경영에 포섭할 수 있다. IP 경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혹은 공공단체는 예컨대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단체와 협업하여 기업 내부의 인적자원들의 실태, 특히 각 분야의 개발자나 연구원들의 근로활동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 봄직하다. IP 경영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되고 지속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리서치 사업은 IP 경영의 미래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해 줄 것이다.

### 마치며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IP 경영'의 담론은 비좁고 낡았다. 이것을 먼저 어찌 해보지 않고서는 국가와 기업의 IP 경영 전략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일부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 — 그렇게 빛나지 않는 — 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일 진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다. 기술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인문학적 통찰, 통섭과 협업의 맥락하에서의 새로운 IP 경영에 대한 화두를 여기 던진다. IP 경영이란 '사람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뜻하며, 사람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IP 경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종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더 멀리, 더 깊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일이다. IP 경영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국 논쟁이 우리의 사유와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논쟁은 돌팔매질이 아니다. 사유를 넓히고 숙성시키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작업이다. IP 경영 전략이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실효성을 가지며 국가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IP 경영에 관한 종래의 담론을 허물어야 한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정말 그렇다. 이는 사람과 창의성이 IP 경영이라는 이름 하에서 복원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며, 이를 통해서 IP 경영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섭', '통합', '융합'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통찰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일이다. 2012. 1 |

#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홍보의 중요성

한-EU FTA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졌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법제도적으로만 완비가 잘 되어 있을 뿐, 농어촌 등의 실거래계에서 경제적인 이익창출을 위해 잘 활용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점 중 실제적인 홍보의 문제점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 태 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지리적 표시가 무엇일까?”, “왜, 지역의 명칭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지리적 표시를 지재권 내에서 보호해주면, 지역의 특산품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 등이 있을까?” 등과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냥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지식재산권적인 보호시스템 속에서 잘 활용되고 있겠지라고만 의식하고 있을 뿐,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식재산권적인 보호가 미치는 영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 한-EU FTA에 의한 중요성 증대

그런데,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한-EU FTA였다. 특히 이미 발효된 한-EU FTA에서의 지식재산권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산물과 관련된 지리적 표시 64개와 EU의 162개가 한-EU협정문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지리적 표시를 양자 간에 상호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sup> 그 대상으로는 이미 국내에서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제로서 등록된 보성녹차, 상주곶감 등이 있고, 유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명칭으로서 고르곤졸라(치즈),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치즈)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sup> 이것은 기존에 TRIPs상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대상이었던 포도주, 증류주에서 더 나아가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도 오인혼동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게 되었다.<sup>3)</sup>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품들은 우리나라의 국내법인 상표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서도 이미 보호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선후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해당 법들에서 보호되는 것들 중에서 FTA상에서의 보호대상을 선정한 것이니, 국내에서의 보호가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보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최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제도의 다수 등장

2004년 개정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의 상황을 보자면, 지리적 표시는 파리조약과 TRIPs 등에서 국제적인 보호가 명시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법상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 등을 위주로 애초에는 보호가 이루어져 왔었다. 이러한 보호방법은 지식재산권적인 보호방법이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으로는 품질인증적인 측면에서 아울러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다가 2004년 상표법 개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도입되어, 지역 특산물의 명칭을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비되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서도 그 이후에 지리적 표시를 특산품명칭에 포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였을 때에 해당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주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하는 제도가 각각 다른 관할기관 내에서 2가지나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하여 곧 발효되어 시행될 한-미 FTA의 이행으로서 상표법에 도입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리적 표시는 지역의 특산품을 법



적으로 보호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특산품들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 지리적 표시에 관한 외형적인 제도완비와 내부적인 실태의 괴리

그러나, 이와 같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여 주는 제도가 다수 완비되어 있고 해당 법제도를 잘 적용한다면,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지식재산권적인 보호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어촌의 경제적인 이익 창출도 기대하여 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외형적인 법적 보호의 모습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하여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다수의 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게끔 완비되어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에 대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적으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위조품

1) 상표법상으로는 제7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등록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조의2에 의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가지 법에 의하여 등록거절과 사용금지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2)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10-가, 10-나 참조.  
3) 최성우/정태호, OVA상표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59쪽.

이라든가 지리적 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등은 실거래계 등에서 다수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권에 관한 소송제기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건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법제도는 완비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법제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고 해당 제도들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어서 그 내부적인 실태는 상당히 초라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한-미 FTA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까지 도입되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관련 제도들이 난립하게 되었을 뿐, 기존의 제도도 농어촌 등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제도의 추가가 발생함으로써 그야말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제도를 통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믿을 수 있고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실제적인 해당 제도들의 이용주체인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는 외면되고, 법제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나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지자체의 홍보로서만 주로 이용하는 공무원들만의 제도로 인식되고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일반 소비자 및 농민의 관점에 대한 정부기관 등의 이해 부족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제도정비는 되어 있되,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 즉, 지역특산품의 실제적인 공급자인 농민들이나 실제적인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들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과 해당 제도를 바라보는 농민이나 소비자들과 정부기관 등의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즉,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은 법적인 권리행사보다는 지리적 표시를 통한 경제적 이득과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 것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 등은 법제도적인 정비와 해당 제도운영에 필요한 지리적 표시의 출원과 등록지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거래계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창출에 대해서는 무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도가 일반 농민이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농민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미흡

한편, 지리적 표시로서 등록을 받은 특산품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것들이고, 지자체나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이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것을 알리거나 홍보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역특산품에 대한 알림 책자나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해당 등록된 특산품을 소개하는 것이 고작이고<sup>4)</sup>, 그 발행부수도 한정된 기관이나 특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

람들만 볼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보물 등의 가지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들을 위한 홍보물 등에 의해서 일반 농민이나 소비자들이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은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제도와 지리적 표시제의 구별조차도 대부분이 어려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까지 도입되면,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도에 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서는 혼란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제도의 인지도에 대한 최근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에도, 해당 제도의 지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 농민들을 포함한 생산자들은 절반정도 인지하고 있을 뿐이며, 지리적 표시에 관한 특산품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매우 인지도 낮음을 쉽게 알 수 있다.<sup>5)</sup> 추가적으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제도들이 현재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에, 소비자와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가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홍보부족도 언급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sup>6)</sup>

그리고, 지리적 표시품을 구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조사하여 보았을 때에, 지리적 표시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압도적인 비율로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sup>7)</sup>, 역시 이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도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지리적 표시품의 판매상승 및 지리적 표시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결국, 이상의 내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성패는 바로 농민들과 소비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활용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제도자체의 복잡성과 활용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도록 홍보 필요

한편, 상기의 통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서 농민과 같은 생산자들은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복잡한 등록절차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주무부처에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

- 4) 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하는 발명특허에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영주사과"나 "장흥표고버섯"과 같은 지리적 표시와 결부된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2011년 6월호 참조)  
 5) 지리적 표시제 인증마크의 인지도 조사 결과(김현정·김동진·조정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6권제4호, 한국조리학회, 2010.12, 183-184쪽 참조.)

조사대상	인식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한다	정확히 모르겠다	총계
소비자	72명(16.6%)	242명(55.8%)	120명(27.6%)	434명(100%)
생산자	85명(57.4%)	40명(27.0%)	23명(15.5%)	148명(100%)
공무원	75명(78.1%)	3명(3.1%)	18명(18.8%)	96명(100%)

- 6)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김현정·김동진·조정은, 위의 논문, 184-185쪽 참조.)

조사대상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부족한 정부지원	홍보의 부족	복잡한 등록절차 및 부대비용	총계
소비자	52명(75.4%)	5명(7.2%)	9명(13.0%)	3명(4.3%)	69명(100%)
생산자	10명(22.2%)	8명(17.8%)	8명(17.8%)	19명(42.2%)	45명(100%)
공무원	16명(51.6%)	3명(9.7%)	3명(9.7%)	9명(29.0%)	31명(100%)

- 7) 지리적 표시품의 구입여부 이유 조사 결과(조정은·김동진·김현정,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5권제4호, 한국조리학회, 2009.12., 166쪽 참조.)

그룹별 분류	이유	응답자수(%)
지리적 표시품을 구입하지 않은 자	인식과 이해의 부족	148명(68.8%)
	높은 가격	6명(2.8%)
	품질에 대한 불신	11명(5.1%)
	차별성이 없는 품질	46명(21.4%)
	지리적 표시에 대한 불신	1명(0.5%)
기타	3명(1.4%)	

- 8) 특허청,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2011.8, 240쪽 참조.

하기는 하지만, 실제 농민들을 찾아가서 제도자체뿐만 아니라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지자체 등의 관주도로 등록을 위한 출원부터 등록의 완료까지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현 시스템 때문에 농민들이 해당 제도의 시스템 자체를 직접 참여할 기회도 없고, 이에 따라 해당 제도를 직접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의 생산자인 농민들이 보기에는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는 좋은 제도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해당 제도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어떻게 해당 제도를 경제적인 이익 창출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9)</sup> 더군다나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권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와 특산품과의 관계 및 이러한 관계에 관한 관련성 및 명성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번에 해당 서류들을 모두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거절이유통지라든가 별도의 지적을 받지 않고 한번에 등록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생산자 단체들에게는 그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sup>10)</sup> 이러한 등록절차 등에 관한 복잡성 때문에 일반 농민이나 관련 생산자 단체가 특허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별도의 지도 등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등록절차를 밟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특산품의 생산자인 일반 농민들에게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그 제도 활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하고, 등록절차 등을 쉽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이나 관련 생산자 단체들이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을 포함한 주무부처에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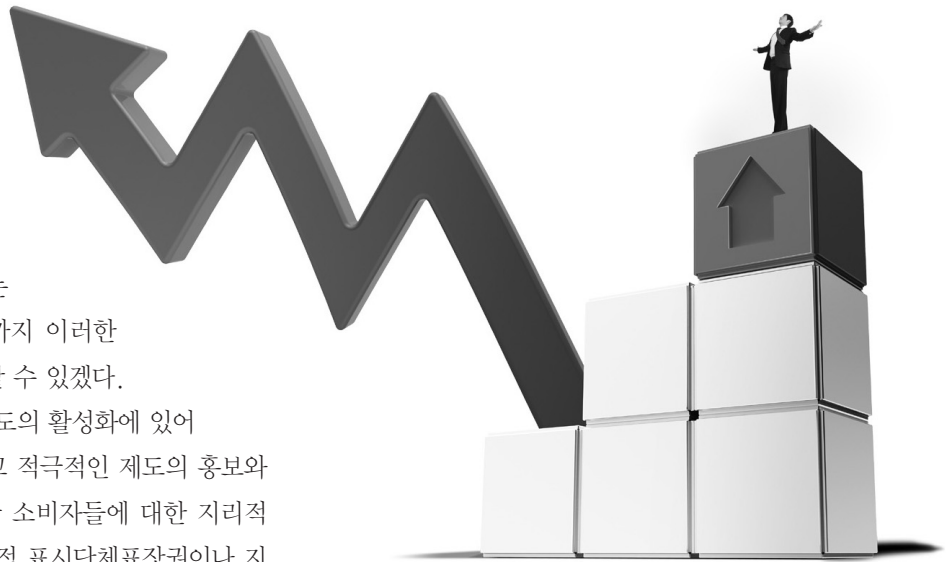
### 결국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성패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인지도의 상승이 중요

현재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인정, 지리적 표시권의 인정, 한-EU FTA에 따른 농산물 등에 관한 별도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인정, 한-미 FTA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인정 등 외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잘되고 있고, 그 제도의 활용 등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우리 주위에서 농산물을 하나 구입할 때에 해당 농산물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나 “지리적 표시권”으로 등록되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이므로, 이것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설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으로 등록된 특산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나 지리적 표시권으로 보호되는 특산품이므로 해당 상품을 구입했다기 보다는 보성녹차나 상주곶감 등과 같은 특산품이 원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나 지리적 표시권으로 등록되기 전부터 품질에 있어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상품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과 품질에 대한 명성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 자체는 잘 완비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특산품의 구입 등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극히 미

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  
리적 표시권이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서 명성을 활용하여 등록도 받  
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것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지금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홍보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홍보, 즉, 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이나 지  
리적 표시권이 확보된 상품은 정부기관에서 그 품질과 명  
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배타  
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방송, 인터넷, 신문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것이고, 결국 지리적 표시품을 믿고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게 되어 농민들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  
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더욱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농민들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도 역시 이상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계속적  
으로 추구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특산  
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더욱 애착을 갖고 상품의  
품질관리에 힘쓰므로써 소비자들도 더욱 품질이 우수한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순환시스템이 정착됨으로서 농  
민들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들은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법제도 자체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욱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지리적 표시침해품이나 위



조표시품들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법적 보호에 나서게  
될 것이므로 해당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정착 및 활  
용에 관한 성패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인지도의 상승에 달  
려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리적 표시보호  
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홍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9) 대한상표협회,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발  
표자료집, 2011.7.15.참조.  
10) 특허청, 앞의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참조.

#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의 특허 전략

중소기업 영역에서의 특허 분쟁 분석, 중소기업들간 특허 상생 전략, 중소기업과 개발자 사이의 특허 상생 전략, 중소기업과 특허 사무소 사이의 특허 상생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송 현 관 변호사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IP정보서비스팀

## 중소기업 영역의 특허분쟁의 특징

### 1)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은 특정 기술분야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대기업에 유사한 물품을 납품하는 동일 기술분야 내 중소기업들이,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 강화 또는 납품 지위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느 한 중소기업들 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에 의한 또 다른 특허 분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상 피고측에서 보복성으로 다른 특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비접촉식(RF) 스마트 카드 업체들 간 분쟁들이 집중되어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휴대폰 안테나 업체들 간의 특허분쟁이 집중되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특히, 일정기간 동일 기술분야 업체들끼리 집중된 특허분쟁은, 특정 기술분야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고, 중소기업 간 업계 순위의 변동을 초래한다.

### 2) 대기업 ·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승리해 권리를 찾을 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처리건수 중 중소기업이 이긴 비율은 2005년 42.5%에서 2007년 33.8%, 2009년 27.1%로 점차 줄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은, 특허업무 인력 자원 및 물적 자원의 압도적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이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 사안이 중소기업에 유리한 사건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분쟁 장기화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 분쟁 승리의 과실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한 사례를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한국과 특허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한국의 벤처기업인 자전거부품업체 엠비아가 자전거 변속기술을 두고 일본 대기업 시마노사와 1조 원대 특허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다.

### 3) 중소기업 · 개발자 간 분쟁

국내에서는 삼성 휴대폰에 사용되는 천지인 한글 자판 사건 등 대기업과 발명 개발자 간의 직무 발명에 관련된 분쟁들이 소수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 영역에서의 주요 사건으로 볼 만한 회사와 발명 개발자와의 분쟁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중견 기업인 니치아 화학과 나까무리 슈지의 청색 LED 특허분쟁에서 발명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한편, 그 간의 필자의 지재권 상담 경험에 있어, 다수의 기업 개발자들로부터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소속 기업의 명의로 아닌 자신을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곤 하였다. 이는 기업 내 개발자들은 재직 중인 회사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 상생의 특허 전략

### 1)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특허 상생 전략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논할 정도의 역학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생 전략이란 서로 간에 견제 수단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

는 것이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말로만 그칠 뿐이다. 부족하나마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즉, 지적재산)에 대한 다양한 보호 수단을 갖추는 것이다. 특허출원 활동이 주요 수단이 되겠지만, 이외에도 개발 기술/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이나 프로그램 등록을 수행하거나, 사내 핵심 인원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Knowhow)로 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 노하우를 추구하는 경우, 사내 기술의 보안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특허 전략으로서, 보호 수단 구축에 우선하여야 하는 국내 기업 환경의 현실이 필자로서도 심히 유감이다.

### 2) 중소기업 간 특허 상생 전략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 간의 대규모 특허분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자를 가지지 못하였다. 중소기업들 간 특허 분쟁은 중소기업들이 가진 특허권의 상당 비율 무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잦은 분쟁은 시장의 외면을 초래하며, 장기화된 분쟁은 시장이 소멸된 후에야 정리되어 승자도 패자도 과실을 얻을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스마트 카드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은 몇몇 위력적인 특허가 무효가 되고 공동출원인이었던 국민은행이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특허분쟁에 부담을 느껴 특허권 유지를 위한 상호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으며, 휴대폰 안테나 분야의 특허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분쟁 대상인 인출식 안테나는 내장형 안테나로 대체되었다.

특히 신속한 신기술 적용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의 중소기업은, 보유한 특허권을 라이벌을 없애는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사가 걸린 싸움은 상대방으로서도 필자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시간

적/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며, 이는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이 다음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라이벌의 특허 침해를 좌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유한 특허권이라는 무기로 상대를 위협하여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적절한 협상을 타결시키고, 신속히 다음 신기술 개발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처리가 될 것이다.

제안하건데, 동일한 분야의 중소기업들 간에 보유한 특허를 서로 공동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들 간 부분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방편이나 특허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이용되거나, 나아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대기업에 대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중소기업과 개발자 간 특허 상생 전략

현장에서의 다수 회 상담/ 방문 경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CEO들은 날로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 환경에서 휘하 직원들을 책임진다는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어려운 현실과 불만족스러운 보상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국가의 기술 선도에 이바지하는데 강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소 상이한 형태의 2 자존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충돌하기도 하는데, 특허 업무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CEO는 개발자를 믿지 못하여 자신을 회사의 대부분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 허위 기재하여 출원하고, 개발자는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여 업무로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출원하려 한다.

발명자 허위 기재 출원은, 신기술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외국 출원 시(특히, 미국은 발명자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심판부/재판부에서 등록된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낮게

보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에 대한 분쟁에서, 발명자인 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은 해당 개발자에게 지급된 임금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무엇보다도 해당 발명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상당한 이득의 일부가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이득을 보지 못한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발명자에게 매우 큰 보상금을 지불하게된 니치아 화학의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지불한 보상 금액이 아니라, 세계 LED 업체들 간의 과열된 특허 분쟁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특허 거래 시장은 미약하고, 개인 발명 특허를 좀처럼 매입하지 않는 대기업의 관행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개발자가 특허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속 회사로 직무발명의 형태로 양도하고 자신이 발명자임을 공인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발명자로서 자신의 캐리어 가치가 높아지며, 최선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나까무라 슈지와 같이 추후에 보상금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개발자 간의 특허 상생 전략은, 원칙적인 직무발명 절차에 따라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직무발명의 원칙은 소정의 사규에 따라 회사가 양수하되, 개발자를 발명자로 기재하고 정당한 보상을 수행하는 것이며, 개발자의 사명은 발명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로 발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경영자와 개발자의 고용 계약은, 개발자는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특허발명을 창조하여 회사에 제공하고, 경영자는 개발자가 제공한 특허발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개발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비록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그 출원 명의 및 사업으로의 이용 권한을 회사에 양도하고, 경영자는 정당한 개발자를 발명자로 기재

하여 발명자의 명예 및 사업적 성공을 거둔 발명특허에 대한 추후 보상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경영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업계 현실에서의 최선의 윈-윈 전략이다.

#### 4) 중소기업과 특허 대리인 간 특허 상생 전략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특허 대리인, 즉 변리사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 기술 유출 및 비용의 측면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기업과 대리인은 위임과 수임의 관계를 맺는데, 위임인은 특정 범위의 업무를 수임인에게 맡기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양호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활한 위임을 위한 신뢰를 갖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특허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단골 관계를 활용하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거래에 있어 지식이 많은 상대방과는 불공정한 거래가 어려우며, 남에 대한 불신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커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CEO나 전담직원이 특허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면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대리인을 불신하지 않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허 대리인 입장에서 최선의 경우는, 자신의 단골 고객인 중소기업이 연간 수십~수백건씩 출원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단골 기업에게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정량 꾸준한 특허출원을 이용하여, 이를 담당하는 외주 특허 대리인을 통한 특허 업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최신 특허 관련 정보들(예: 한국/외국 특허청의 심사 관행)을 얻을 수도 있다.

###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원칙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상생 전략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원칙들을 살펴보겠다.

#### 1) 원칙에 충실하게

원칙에 충실한 특허 활동이 향후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특허로 직접 매출을 올리는 특허피물이 아니며, 거시적으로 시장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특허피물처럼 적극적 공격을 위한 길목 특허 활동을 하거나, 대기업/공공기관 처럼 광범위한 PM(Patent Map)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충실히 이행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수단 및 준비처럼 미래의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제조업체에서의 특허 업무에 대한 원칙이다.

업무에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거나, 기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데 있어 기술 개선이 달성된 경우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 우선 전략이 중소기업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다. 이때 발명자란에 정확히 해당 발명을 완성하는데 실질적 기여자들만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다.

#### 2) 적절한 자원안배

특허의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수단 및 준비처럼 미래의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일정한 인적/물적 자원은 특허 업무를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특허출원 절차, 특허 분쟁 절차,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며, 회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현황을 관리하는 직원의 보유 및 외주 특허 사무소를 통한 특허 업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3) 다툼보다는 협력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사업 영역을 가지는 경쟁 중소기업과의 관계, 개발자와의 관계 및 특허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상생을 지향하여야 한다. 2012. 1 |

#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식품·미용·통신판매업 등의 9개 분야에 대해 A씨가 2007년 출원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상표권을 기초로 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녀시대’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 사실이 SM측에 알려지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녀시대가 데뷔할 즈음에 ‘소녀시대’를 출원한 A씨의 상표권은 그대로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 선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호사

2011년 12월 19일자 인터넷 미디어 <스타뉴스>에 하기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가수 ‘소녀시대’의 상표권이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현재 SM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몇몇 분야에서 타인에게 ‘소녀시대’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 당해 소녀시대의 약자인 ‘소시’ 또는 한자 ‘少女時代’에 대한 상표출원을 해 등록 받은 상태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소녀시대’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A씨가 나타나면서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소녀시대에 대한 의류 및 통신판매업 분야의 상표권을 등록한 뒤 ‘소녀시대’라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쇼핑몰에 무단상표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해, 수십 개에 달하는 쇼핑몰이 많게는 수백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현재까지 의류, 식품, 미용 및 통신판매업까지 무려 9개 분야에서 ‘소녀시대’의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상태로, 다른 분야에서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중략)...<sup>1)</sup>”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류를 이끌고 있는 ‘소녀시대’의 상표권이 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 이렇게 될 경우 SM이 ‘소녀시대’ 이름으로 기념품 의류를 판매할 수도 없고,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음식류도 판매할 수 없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온다. 우선, 이러한 어불성설의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잘못된 상표권 관리를 잘 하지 못한 SM에 있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번호	건명/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선권주장번호 주선권주장일자	상태	상품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1	少女時代	402009037214 (2008.08.04)	402010082560 (2010.11.29)	400860700000 (2011.04.12)		등록	21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2	少女時代	4020070035757 (2007.07.04)	4020080004883 (2008.01.30)	4007595950000 (2008.06.23)		등록	16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3	少女時代	4020070035756 (2007.07.04)	4020080004882 (2008.01.30)	4007595950000 (2008.06.23)		등록	09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4	소녀시대	4020070035755 (2007.07.04)	4020080004881 (2008.01.30)	4007595950000 (2008.06.23)		등록	16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5	소녀시대	4020070035754 (2007.07.04)	4020080004880 (2008.01.30)	4007595950000 (2008.06.23)		등록	09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6	소녀시대	4520070002980 (2007.07.16)	4520080002544 (2008.06.11)	4500264430000 (2009.02.10)		등록	31 28 33 44 23 30 25 35 32		

<한국 특허정보원 Kipris 검색 발췌 화면>

다. A씨의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윤리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SM과 같은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조차 연예인 브랜드 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상표권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잘잘못은 차치하고서 과연 SM엔터테인먼트는 A씨의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에 위배되어 착오로 등록된 상표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판을 통해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sup>2)</sup>. 그러나, 한번 등록 받은 상표를 무효화시키기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며, A씨의 등록상표가 법에서 규정하는 등록 무효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SM의 '소녀시대' 상표의 등록 및 거절현황을 살펴보고, A씨의 등록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만일 상표법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면 다른 제도 또는 법으로 A씨의 상표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SM은 다음과 같이 '소녀시대' 및 '少女時代' 상표를 제9류(CD음반, MP3 등)와 제16류(서적, 인쇄물 등)에 대해 등록 받았다.

상기 그림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SM의 등록상표이고, 6번은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A씨의 상표이

다. A씨는 다류지정을 통해 25류(의류, 신발, 모자류), 28류(완구류, 스포츠용품 등), 제29류(육류, 유제품 등), 제30류(커피, 빵류 등), 제31류(과일, 어패류 등), 제32류(맥주, 음료수 등), 제33류(알콜 음료 등), 제35류(상기 제품들의 판매업 등), 제44류(의료업, 미용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업에 '소녀시대'를 등록 받았다. 그렇다면, SM은 A씨처럼 음반 및 서적을 제외한 다른 제품 및 서비스업에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을까? SM은 상표 출원을 추후에 시도했으나 하기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거절결정이 되었다.

번호	건명/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선권주장번호 주선권주장일자	상태	상품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1	少女時代	402009037218 (2008.08.04)				거절	28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2	소녀시대	402009037208 (2008.08.04)				거절	14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3	少女時代	402009037212 (2008.08.04)				거절	14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4	少女時代	402009037215 (2008.08.04)				거절	24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5	少女時代	402009037213 (2008.08.04)				거절	18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6	소녀시대	402009037211 (2008.08.04)				거절	24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7	少女時代	402009037216 (2008.08.04)				거절	25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8	소녀시대	402009037209 (2008.08.04)				거절	18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9	少女時代	402009037219 (2008.08.04)				거절	03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10	少女時代	412009037833 (2009.08.04)				거절	35		주식회사 에스엘 엔터테인먼트

1) <http://star.fnnews.com/news/index.html?no=52664> 참조.

2)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1	소녀시대	4020100045338 (2010.09.03)	거절	03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2	소녀시대	4020100046336 (2010.09.03)	거절	28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3	소녀시대	4020100046387 (2010.09.03)	거절	30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4	소녀시대	4020100046340 (2010.09.03)	거절	33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5	소녀시대	4020100046339 (2010.09.03)	거절	32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6	소녀시대	4020100046335 (2010.09.03)	거절	25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7	소녀시대	4020110019013 (2011.04.11)	출원	21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SM 역시 A씨와 유사한 제품들에 상표 출원을 시도하였다. 뒤늦게 ‘소녀시대’가 유명해지면서 의류 및 완구류 등에 상표권의 확보가 시급함을 깨닫고 2009년에 출원을 시도하였으나 거절결정되었고, 또 다시 2010년에 화장품류, 완구류 쪽에 출원을 시도했으나 거절결정되었다. 거절결정된 이유를 찾아보니 역시 A씨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17건의 상표가 모두 최종적으로 거절결정되었다.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원인명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출원인코드: 119986151701)  
주소 서울 강남구 일구정동 521번지

대리인명 특허법인신세기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1동829-6, 응전빌딩 3층(특허법인신세기)

출원번호 40-2009-0037212  
상품(서비스업)류 제 14 류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단편, 소명)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보정 보완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예외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인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구리도넛, 귀금속제 기념품, 귀금속제 기념품, 주화, 귀금속제 열쇠고리, 장식열쇠고리(귀금속제) 귀걸이(귀금속제),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휘장, 귀금속제 모자장식, 귀금속제 벨트장식, 귀금속제 보닛용 핀, 귀금속제 실(絲), 귀금속제 액세서리, 귀금속제와이어, 귀금속제핀(장신구), 금줄(장신구), 넥타이핀 {귀금속제}, 대형메달, 메달(귀금속제), 보석목걸이, 보석반지, 보석발목장식, 보석브로치, 보석장식품, 보석제 액세서리, 보석체인, 보석핀업트, 부직(보석), 소형 장신구(보석), 은제 장식품, 장식핀(귀금속제), 향(Charms) {보석}, 체인(귀금속제), 큰메달(귀금속제), 티아라(귀금속제), 팔찌(귀금속제), 축약제 장식품”와 관련하여 볼 때, 이 출원상표의 주요부인 “소녀시대”와 타인의 선행등록 상표서비스 제450026443호(소녀시대)의 주요부인 “소녀시대”의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상품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출원하거나 상기 타인의 선행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품의 실질적 범위를 제한하거나 세분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이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소녀시대의 팬을 자처하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스타인 ‘소녀시대’의 상표를 감히 선점한 이 A씨의 ‘소녀시대’ 상표는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유명한 ‘소녀시대’의 상표를 제3자가 등록했다니 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 등등이 매우 궁금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A씨의 상표는 무효심판을 통해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A씨의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가능한 것은 ‘소녀시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라 할만큼 저명한 명칭이어서 이를 다른 상품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이 가수 ‘소녀시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의 저명한 명칭을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동조 동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sup>3)</sup>) 이들 규정 모두 무효 대상인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상표가 유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녀시대’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2007년이 데뷔시점이며, A씨는 2007년 7월 16일에 ‘소녀시대’를 상표 출원하였기 때문에 A씨의 상표 출원 시점인 2007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볼 때 데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소녀시대’가 저명한 상표라 하기는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씨의 상표를 ‘소녀시대’가 저명한 상표 혹은 명칭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무효화시키기란 다소 어려울 것이라 전망된다. SM은 이전에 A씨의 상표가 2008년 즈음에 출원공고가 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는데 특허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A씨의 ‘소녀시대’가 등록되게 되었다. 특허청의 ‘이의결정문’에 따르면 역시 A씨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녀시대’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거절결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는 SM이 현 시점에서 무효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SM측이 받은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되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소녀시대"의 주지 정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이의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와 유사한 저명한 명칭이 존재하였다는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 '소녀시대' 출원상표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의 이의결정문 발췌〉

그렇다면, 무효심판 이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상표법에는 무효심판 이외에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sup>4)</sup>. 상표권을 확보하기만 하고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의 사용할 것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살린 제도가 바로 '취소심판'이라는 제도이다. A씨의 경우 음식류부터 의류, 완구류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함께 지정했는데 한 개인 또는 한 업체가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이종(異種)의 상품들을 한꺼번에 취급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A씨는 '소녀시대'를 해당 상품들에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SM이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A씨의 등록상표 '소녀시대'가 3년의 불사용 기간을 만족하려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2008년 12월에는 등록이 된 상태여야 하는데 A씨의 상표 등록일은 2009년 12월 10일로서 안타깝게도 취소심판의 요건을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SM으로서는 무효심판보다는 취소심판의 승소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므로 이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2012년 12월 즈음에는 바로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A씨와 상표권 양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A씨가 그 전까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SM에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이는 실제 소송으로 가서 A씨가 자신의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

로 A씨가 어느 정도 '소녀시대'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했느냐에 따라 손해액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A씨가 단순히 사업을 구상한 상태에 머물렀다면 그 손해액은 미미하게 나올 것이나 만에 하나라도 사업을 준비, 진행했던 사실이 있어 상당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SM으로서는 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SM과 같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야심차게 내놓으면서 직접적인 관련 상품인 '음반, 서적류' 쪽에만 출원을 하고 정작 스타가 되고 나서 더 많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패션, 완구, 음식 제품들에는 그 상표권을 타인에게 선점당하여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SM이 출시한 '소녀시대' 패션제품, 완구류, 음식 제품들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표 전문가 입장에서, 또 '소녀시대'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소녀시대'라는 엄청난 한류 브랜드의 탄생 초기부터 상표권의 제대로 인식하고 관련 제품 영역까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SM이 앞으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소녀시대' 상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소녀시대'로

20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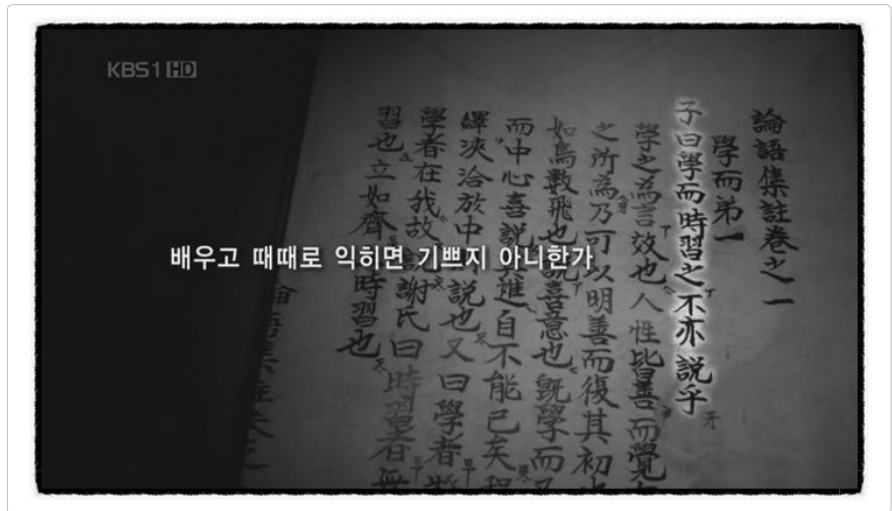
- 3)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4)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 동조 동항 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성장하는 조직의 비밀, ‘학습’

성장을 방해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



이 태 원  
한국발명진흥회 성과관리/팀 계장



〈그림1〉 ‘학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전해 준 논어의 첫 구절은 학습을 즐거운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KBS스페셜 중)

## 또 교육이라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교육들을 보내도 보고, 훌륭한 외부 강사를 불러서 초청 강연이라도 해 본 CEO나 교육관계자라면, ‘학습’이라는 말에서 불쑥 무슨 또 교육이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다. 직원들을 위해 돈과 시간을 들인데 대해 그만한 효과나 성과는커녕 특별히 감사의 말이라도 들었으면 싶었다는 게 그들의 반응일 거란 예상을 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웬지 교육이라는 것이 기업에는 분명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교육을 단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을 기업과 조직에 효율한 수단으로 만들어 주려면, 교육을 강조하고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직무와의 연결점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의무 교육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수 직무교육 항목을 정해놓고 이를 수강토록하거나, 외부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직무향상 교육들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육의 결과를 역량향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한 때 활용해 보는 교육의 방법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만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방안' 과 같은 교육을 수강했다고 할 경우, 팀 전체가 이 교육을 함께 수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교육받은 바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교육받은 내용을 이상적인 팀워크의 모습으로 인지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자신이 업무하는 팀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의 교육을 팀의 일원이 일회성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실의 어느 팀에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5~6단계의 명확하고 시스템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절차를 배운 것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합리성이 급격하게 향상되기 어렵고, 이를 쉽게 측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기업은 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은 '기업은 교육을 통해 전통을 전수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조직은 암묵지의 형태로든 형식지의 형태로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의 능력을 내재화한

다.

과거 IMF사태<sup>1)</sup>를 통해 우리도 충분히 경험한 바는, 눈앞의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줄지언정 사업의 축소와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얻은 규모의 축소에 따른 경영효율의 강화이지, 구조조정이 기업의 건전성에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반면, 배우지 못해 망했다고 이를 악문 기업들은 오늘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다. 삼성의 세계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격상된 것만으로도 이는 명확히 증명이 된다. 한때, 테헤란로의 마지막 남은 삼성건물을 매각해야 했을 정도의 자금압박에 처했을 때에, '다시 돌아오겠다!' 고 다짐한 삼성의 뜻은 테헤란로의 시작점에 삼성이 세운 삼성타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이건희 회장이 올해 단행한 문책성 인사**


**6월 15일**  
삼성테크윈 비리 감사 후속 조치로  
삼성테크윈 CEO,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인사팀장 교체

---

**7월 1일**  
LCD 사업부진 문책으로 LCD 사업부장 경질.  
LCD 조직 통폐합

---

**10월 25일**  
삼성의료원 경영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원장 경질. 비(非)의료인인 윤순봉  
사장을 삼성서울병원 사장으로 선임.



**<그림2> 기사**는 문책성 인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로 보인다. 리더만 바꾼다고 변화를 일으키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화의 도구로는 조직학습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sup>2)</sup>

1)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방만한 국채, 외화경영체제의 결과로 발생한 모라토리움에 대해, 회생자금을 지원했다. 따라서 IMF를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IMF사태라고 하는 표현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위기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으로 선택해 봤다.

2) 삼성서울병원 사장으로 선임된 윤순봉 사장은 디지털 유목민을 강조하는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배움을 강조하고, 사장단 교육에 열을 올린 이진희 회장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할 것이다.

이진희 회장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례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막연한 비전의 강조와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혁신의 사례를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 교육과 학습의 과정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에 본격 도입하면서,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의 역사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sup> 이 사례연구의 강력함은 이것이 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명확한 형식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마케팅이나 새로운 제품의 론칭이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성공의 요소를 뽑아냄으로써, 연구자가 속한 기업이 취할 성공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기업과 조직은 도제식 교육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성공의 형식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형식지들이 있어야만 조직 전체에 내재화할 재료들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 하버드 MBA 사례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

“파워포인트와 통계는 있어라.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형식지라고 해서 그것이 업무표준으로 작성되거나 일정한 양식과 프로세스를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연구에서는 공식화된 표나 형식화된 양식이 아닌 스토리를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의 틀로서 형식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업무상의 매뉴얼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업무의 매뉴얼화는 일단 기업 내에 이를 갖추기 시작하면, 최소한 연단위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단위업무의 변화와 협력기업의 변경에 따라 즉시적

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의 혼선을 주는 단점이 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만든 도구가 오히려 업무의 발목을 죄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마치 대학시절 시험을 앞두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소위 ‘족보’라는 것이 그 교수의 것이 아닌 이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하겠다.

어려서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고 자란 아이들이 후에 큰 업적을 이루는 위인이 된다는 것은 동서양에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전문가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다.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마케팅 전문가를 찾아 어렵사리 채용을 하고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사의 타겟 시장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놓거나, 기업의 핵심사업의 변경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막상 뽑아놓은 전문가가 필요 없는 인력이 되어 쫓겨나 버리는 사례도 흔하다. 결국 극단적으로는 Specialist를 일반 행정직원으로 만들어버려, 직원 개인에게도 그동안 갖고 닦은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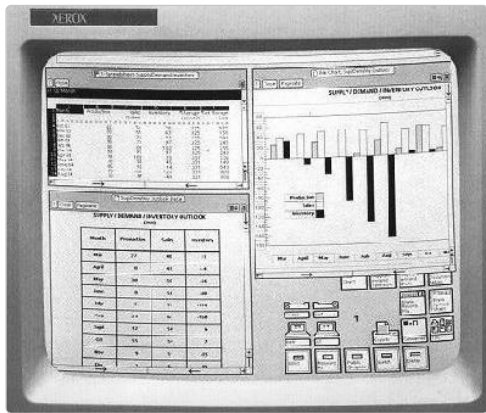
## 형식지의 내재화

먼저는 기업에서의 교육은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 오기 이전에 자사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확인하는 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잘 배워 와도 이를 내재화할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머리 따로 몸통 따로의 형해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내부의 시스템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도입할 필요 내지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자사의 문제해결 과정에 교육과 학습이 내재되어 있는가? 단발성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급급한 구조는 아닌가?

애플의 매킨토시를 탄생시킨 영광은 어쩌면 제록스의 PARC(팰러앨토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PARC를 방문하여

마우스의 클릭으로 동작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보지 못했더라면, 언젠가는 제록스가 활용해서 보다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모른다. 그런 제록스의 PARC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과정에 빚대어, 형식지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림3〉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거야!”를 외쳤던 제록스 PARC의 GUI 시스템. 이후 매킨토시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그림4〉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더컨 교수가 말하는 전략적 직관을 얻는 4단계. 스티브 잡스가 PARC에서 GUI 시스템을 채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10.7.2)

제록스 문제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다. 단순히 문제의 확인과 선택이라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문제를 분석하기에 이르는 횡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6개의 종적인 단계와 각 단계별로 4가지의 종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로 횡적인 과정은 일률적으로, ‘질문 - 확대/확산 - 축소/수렴 - 다음단계를 위한 요소검토’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첫 번째 단계인 문제확인 및 선택에서의 질문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

이다. 그리고 확대/확산의 과정에서는 고려사항들을 최대한 짚어 보는 것이다. 축소/수렴과정에서는 총론을 모으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단계를 위해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앞서 확인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교육과 학습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과제는 이러한 언어의 통일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다. 문제의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하고 공유한 바람직한 상태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그러한 원인을 다각도로 확대 검토하고, 축소/수렴 과정을 통해 주요 요인을 검증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확정되고, 원인이 검토된 바는 문서화를 통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확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선포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앞서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앞의 두 단계가 문제인식이라는 What의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How의 질문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이들 아이디어들 가운데서 실행가능성의 순위로 해결책 목록을 작성한다. 물론, 실행가능성만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의적인 해결방안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직 전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가 많으며

3) 최근 들어, 하버드 MBA의 투자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MBA 졸업생 19명중 10명은 ‘완전실패’ 라는 식의 조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분위기의 반영인지 몰라도, 최근 하버드 MBA는 필드(FIELD)라는 이름의 현장중심의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로, 실행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번째 단계로는 해결책의 선택과 계획이다. 실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묻고, 해결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판단할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이를 평가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해결책 가운데 동의한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면, 이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해결책의 실행이다. 계획은 가변적인 사실은 항상 주지해야 한다. 무엇에도 완벽한 계획은 없다. 계산하지 못한 변수와 미지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정했으면 실행이 우선이다. 잘못된 해결책이라면 되도록 빨리 실패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는 해결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해결책이 계획에 맞춰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작용을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점을 확인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실행된 해결책과 제안된 다양한 방안 중에서 새롭게 방법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 활용 가능했던 기존의 문제해결 패러다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된 조직은 이러한 과정에서 선협적인 해결방안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더 쉽게 찾아낸다. 오늘날의 교육은 도제식 교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하게 마련이고, 이는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해결된 듯 보이지만, 문제점이 잠재된 형태로 위기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것이 오픈된 구조가 아니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나누는 분위기라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문제점이 숨겨지는 곳은 임원이나 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터운 중간층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간 관리층의 축소

피터 드러커는 조직 내에 정보순환이 활성화되고, 학습이 활발한 조직은 중간관리층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중간관리층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효율적인 이동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가벼운 조직을 원하는 CEO의 입장과 달리, 중간관리층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정보의 흐름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임원이나 CEO의 입장에서 볼 때 말단의 생생한 정보가 지나치게 가공되거나 입수되는 정보의 규모가 작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심해 보면 된다.

많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착각은 조직의 상층으로 갈수록 고급 정보가 더 많이 오고갈 것이며, CEO가 가진 정보가 최상의 정제된 정보라는 생각이다. 분명히 시각에 따라서는 확연한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CEO가 접하는 정보의 규모와 말단직원이 접하는 정보의 양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사업 운용의 결정적인 정보가 말단에 닿아 있을 때, 그것을 판별하는 체계가 없다면, 그 귀중한 정보는 하위 직급자가 가졌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평가받지도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갖는다.

현장전문가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이러한 정보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교육과 학습이 추구하는 것도 현장의 담당자들을 전문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장의 담당자들이 정확하고도 기민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담당자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된다. 날고자 하는 독수리의 발목에 끈을 묶어 놓으면, 독수리를 잃지 않을 가능성은 높을지 몰라도, 사냥 능력은 전혀 발휘할 수 없다. 심지어 그 독수리는 발목에 매인 가죽끈을 부리로 끊고 달아날지 모른다.

사냥매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통제와 먹이관리에 있지 않다. 인간과 매의 교감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조직과 조직 내의 구성원간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한다. 물론, 각

사람이 특정한 기능단위로 보는 것은 비인간적인 접근법 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공유와 공감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학습조직의 구축

조직의 학습은 로마와 같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인내하지 않으면 조직은 과거를 답습하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기업과 고객과 협력 업체들이 모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 치열한 교육과 학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직과 기업에 학습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조직을 선도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할 때,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얼버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없으면 만들라.



〈그림5〉 IDEO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장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포스트잇에 표현하여 공유하고 있다.

첫째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압력으로 작용할 때, 직원들은 교육과 학습을 회피수단으로 삼는다. 피난처로 삼기 딱 좋다.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더 할 말이 없다. 학습을 위한 시간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최고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과 토론의 기법들을 적용하는 일이다. 펜이 좋으면 글씨도 잘 써지는 법이다. 천재는 악필이

라고 말하는 이들은 분명 천재가 아니다. 괴테가 남긴 서체를 보라. 유려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브레인스토밍을 제대로 활용해 보는 것도 권장할 일이다. 트리즈(Triz)와 같은 기법을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조직도 있다. 필기도구가 달라질 때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청바지와 정장 혹은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의 자세와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처럼, 학습과 회의의 방법이 달라지면, 그만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는 상호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것이다. 조직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직위체계를 허물고, 원탁회의를 이끄는 사례도 많다. 그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겠지만, 그런 노력을 취하는 기업들을 관찰하면, 역동적인 변화의 힘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외부적인 타격으로 움찔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꿈틀하는 것의 차이를 안다면,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분명 자발적으로 꿈틀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들이 다양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존의 조직이 가진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로는 학습포럼을 만드는 것이다. 흔히 CoP (Community of Practice)는 표현 그대로, 사례를 만들기 위한 모임인 것이다. 우리말로는 학습조직이라고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앞서 말했던 형식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형식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경영환경 및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툴)과 기업의 기술 혹은 제품 포트폴리오,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특허맵이나 기술평가자료 등이다. 또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감사체계와 내부 경쟁력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부적인 성과와 성장 시스템이 효

울과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간의 공유와 상호학습이 필요하다. 애플의 GUI 시스템이나 iPhone의 운영체계를 베끼는 것으로는 특허침해 같은 것은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외부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협력기업과의 워크숍은 물론이려니와 관련 업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주최기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기를 권한다.

## 학습의 효율 평가

학습의 효과를 평가하지 못해서, 학습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자들도 제법 존재한다. 대규모의 생산단위를 가진 기업의 경우는 6시그마와 같은 학습의 척도를 가지는 사례도 있지만, 그와 같은 규모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에서 측정도구를 갖기란 쉽지 않다. 흔히 경험곡선이라는 것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 생산원가와 가격의 제조의 효율성에서 판가름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습을 그저 동기유발의 요소로만 인식하고, 학습의 기회를 선택의 문제로 돌릴 것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학습이 조직 성장에 필수요소라는 점을 간과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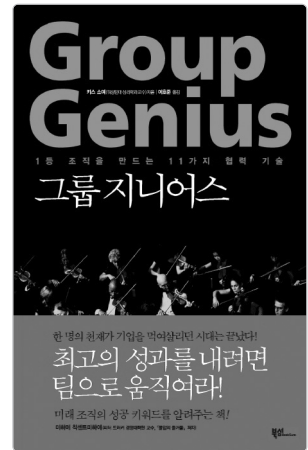
물론 제조기반을 가진 반도체 기업에서 도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있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학습의 속도와 효과가 높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어쩌면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원가나 단가 혹은 비용의 절감을 고수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를 놓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혹은 단지 복지차원으로 생각해서, 돈이 남으면 할 수 있는 생산 외적인 요소로 치부했을 것이다.

학습의 성과는 세 단계를 따라 확인된다. 첫째는 인지단계. 성공적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아이디어들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이 깨이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의 필요를 느끼는 단계가 된다. 그 다

음은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해 보는 행동단계로 넘어간다. 스스로 필요하고 좋다고 느낀 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유형이라고 보면, 앞서가는 좋은 사례를 많이 접할수록 행동의 요소도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단계로서 성과개선의 효과가 드러난다. 측정가능한 개선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애초에 특정한 교육을 정해 놓고, 그 교육이 가져올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개선과 성과의 아이디어는 제한된 루트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sup>4)</sup>

조직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직원들의 행동분석을 통해 기업이 바라는 공통된 혹은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학습감사의 도입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영층에 대한 설득자료로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공유화할 수 있는 측정지표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에 특정한 자료를 선뜻 제공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문화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산업계의 환경분석을 통해 학습의 목표가 나올 것이므로, 교육담당자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석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까지의 짧은 글로나마 보다 효율적인 학습조직을 구축하여, 항상 발전하는 기업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해 보았음을 밝힌다. 2012. 1 |



(그림6)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물입'을 그룹차원으로 분석·적용한 그룹지니어스.

4) 키스 소어의 '그룹 지니어스, 복심 출판사, 2008.1.20' 를 통해 조직의 창의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살펴보길 권한다.

# Report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여기서 잠깐 <특허 Q&A>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고찰 및 사례연구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

오픈마켓에서의 침해행위 시 오픈마켓 운영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판례)

여기서 잠깐 <발명역사 속으로>

# Report

#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해 보자.



임 호 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장

## I. 서론

### II. 일본의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및 등록

1. 일본특허청 현황
2. 지재권 출원 및 심사 건수
3. 지재권 등록건수

### III. 일본의 지식재산권 심판

1. 일본의 특허심판부 현황
2. 지재권 심판청구
3. 지재권 심판처리

### IV.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1. 일본의 법원 조직
2.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체계
3. 심결취소소송
4.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5. 특허권 · 실용신안권 민사소송 상세 분석

### V. 일본 변리사 등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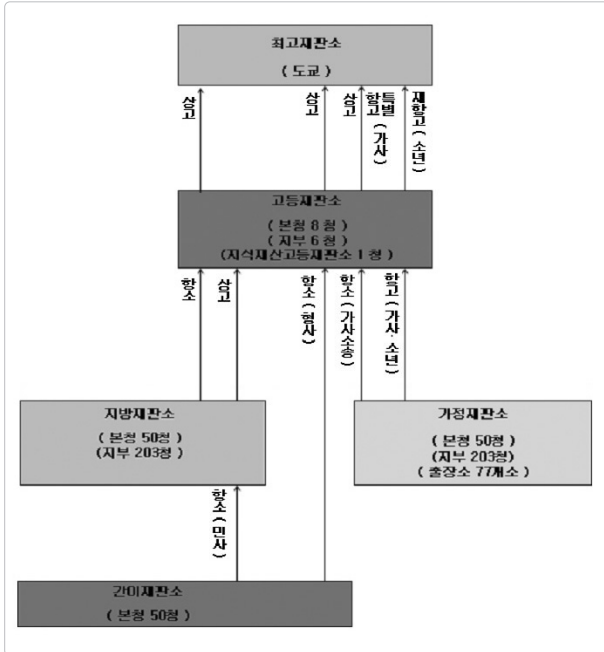
### VI. 결어

## IV.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본 절에서는 일본의 지식재산 소송 체계 및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의 법원조직

일본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법」에 따른다. 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면 일본의 하급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된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외에 재판소법으로 고등재판소(8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본청 50개 및 지부 203개), 438개의 간이재판소를 두고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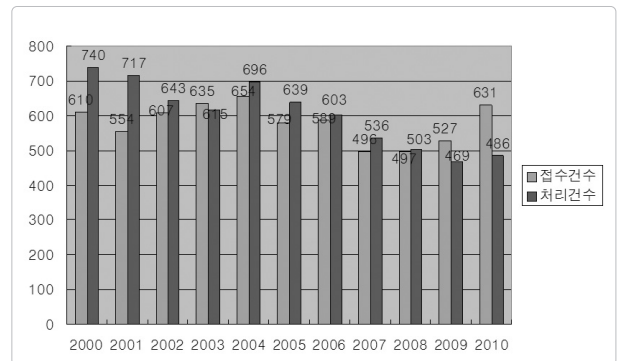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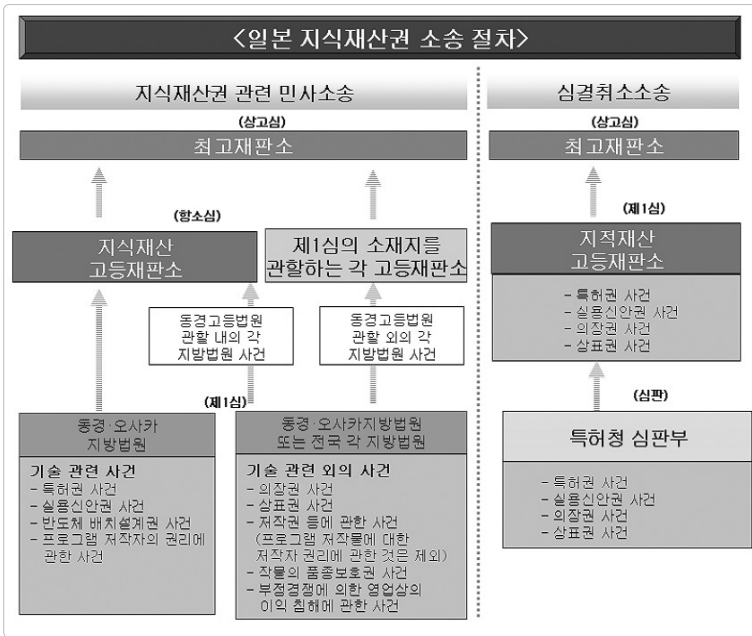
**일본의 지재권 소송 체계**

일본은 2004년까지 지재권의 심결취소소송·침해소송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이 특허소송 관할 체계를 대폭 변경하게 된 것은 2002년 일본 총리 주재로 지식재산입국을 기치로 내세우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허소송 개혁조치 첫 단계는 2004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침해소송 제1심의 관할 법원을 기존 50개 지방재판소에서 2개 지방재판소(동경, 오사카)로 대폭 축소<sup>16)</sup>한 것이다. 한편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관한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방재판소 외에 동경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의 경합관할로 하였다.<sup>17)</sup>

또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동경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로 함<sup>18)</sup>으로써 항소심 관할을 집중하였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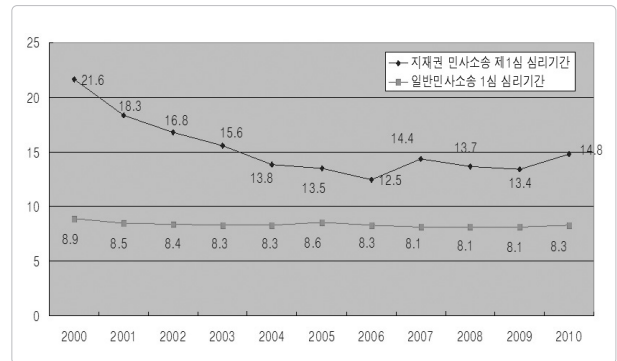
본은 한발 더 나아가 2005년에 동경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창설하였다.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지식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에 의해 설치<sup>19)</sup>되었으며, 2005. 4. 1.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재 4개 상설재판부, 1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 심판부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인 심결취소소송도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이며, 결국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관할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전속관할), ② 특허, 실용신안, 반도체 집적회로,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침해사건(전속관할), ③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의한 침해사건 중 동경고등법원 관할지역 내 사건<sup>20)</sup>

15) 우리나라는 대법원, 고등법원 5개 및 특허법원, 18개의 지방법원 및 38개의 지방법원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일본 민사소송법 제6조(특허권등에관한소 등의 관할)제1항: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 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등에관한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1. 東京고등재판소, 名古屋고등재판소, 仙台고등재판소 또는 삿포로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東京지방재판소  
 2. 大阪고등재판소, 広島시마고등재판소,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또는 大分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大阪지방재판소  
 ② 특허권등에관한소에 대하여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전항 각호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간이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에도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7) 제6조의2(의장권등에관한소)의(관할) 의장권, 상표권, 저작자의 권리(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제외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성자권에 관한 소 혹은 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정경쟁을 말한다)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계된 소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재판소에도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전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한 재판소 : 東京지방재판소  
 2. 전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한 재판소 : 大阪지방재판소  
 18) 일본 민사소송법 제6조제3항: ③제1항 제2호에 정한 재판소가 제1심으로서 한 특허권등에관한소에 대하여의 중급판결에 대한 항소는 東京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소송의 중급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제2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치) ①東京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다음에 기재한 지적재산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기 위하여 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지부로서 東京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한다. (이하 생략)  
 20)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만을 전속 관할하는 점에서 일본의 지식재산고등재판소와 차이가 있다.



〈지재권 민사소송 제1심 추이〉

2010년 지재권 1심사건의 평균심리기간은 14.8개월로 일반 민사소송 제1심사건의 평균심리기간(8.3개월)에 비해 1.8배 가량 길다. 다만 2000년의 지재권 1심 심리기간이 21.6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단축되고 있다.



〈지재권 1심사건과 일반 1심사건의 평균심리기간 비교(단위 : 개월)〉

지식재산권의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접수건수는 2000년 216건이었으나 2010년 130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sup>25)</sup> 민사소송 항소심의 평균심리기간은 2000년의 10.4개월이었는데 2010년에는 8.0개월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항소율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재권 민사소송 제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은 25~29% 수준이다.

### 심결취소소송<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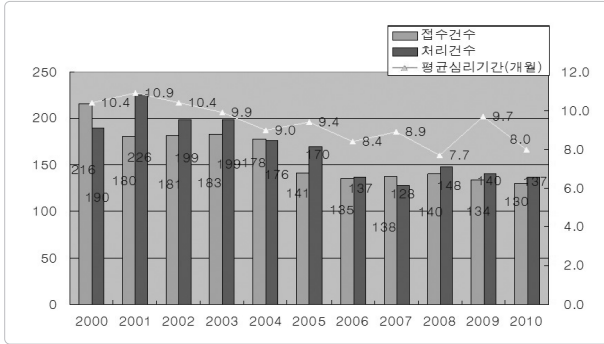
일본의 심결취소소송 접수건수는 400~500건 수준인데<sup>22)</sup>, 2005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심결취소소송의 평균심리기간은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12개월이었으나, 설립된 후인 2005년부터는 9개월로 단축되었고 2010년에는 7개월로 줄었다.<sup>23)</sup>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접수건수	478	575	636	534	527	589	566	437	496	443	413
처리건수	430	471	571	693	619	609	591	543	494	442	444
평균심리기간(개월)	11.6	12.0	12.7	12.4	12.6	9.4	8.6	9.1	8.0	7.5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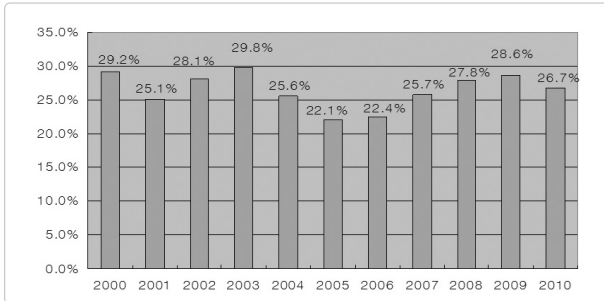
〈심결취소소송 추이〉

### 일본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의 제1심 사건은 연간 500~600건 수준이다. 200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sup>24)</sup>



〈지재권 민사소송 항소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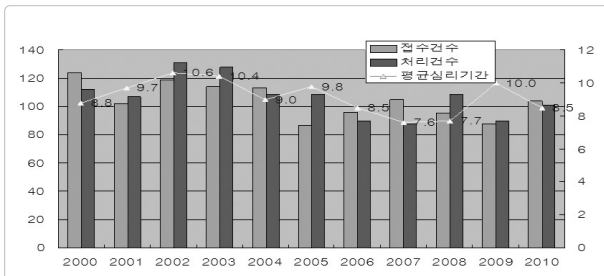


〈지재권 민사소송 제1심결과에 대한 항소율〉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처리하는 지재권 민사소송 건수는 연간 100건 내외이고, 평균심리기간은 7~10개월 수준이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접수건수	124	102	119	114	113	87	96	105	95	88	104
처리건수	112	107	131	128	109	109	90	88	109	90	101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민사소송 사건처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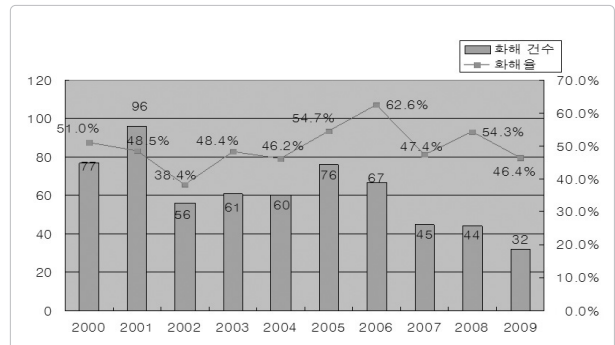
### 일본의 특허·실용신안 침해소송 분석

지금까지는 일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모두 포함한 지재권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특허분쟁의 핵심이 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의 이용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sup>26)</sup>.

일본 특허·실용신안 침해소송 1심 건수는 2001년 198건이었는데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9년 69건까지 줄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회해 건수	77	96	56	61	60	76	67	45	44	32	614	
판결 단위 내 분	권리자 (일부)패소	63	83	71	56	58	52	35	40	29	32	519
	권리자승소	11	19	19	9	12	11	5	10	8	5	109
	소계	74	102	90	65	70	63	40	50	37	37	628
합계	151	198	146	126	130	139	107	95	81	69	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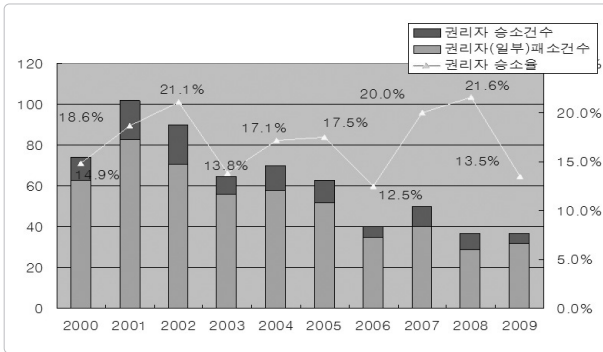
특허침해 1심사건 중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50% 내외이다.



〈특허·실용신안 침해소송 1심사건의 화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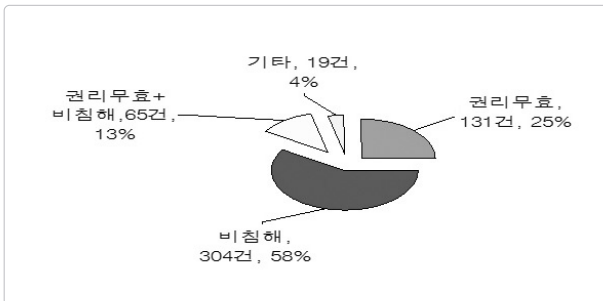
21) 출처: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ip.courts.go.jp/aboutus/statistics.html>  
 22)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처리건수는 2008년 1,566건, 2009년 1,203건, 2010년 1,013건이었다.  
 23) 2010년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평균심리기간은 6.2개월이었다.  
 24) 우리나라의 지재권 민사소송 제1심 접수건수는 2009년 129건, 2010년 184건이었다.  
 25) 우리나라의 지재권 민사소송 제2심 건수는 2009년 41건, 2010년 54건이었다.  
 26) 특허·실용신안 분야 민사소송 자료는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소위원회([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uu/toushin/shingikai/sangyou\\_kouzou.htm](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uu/toushin/shingikai/sangyou_kouzou.htm))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일부통계는 앞 절의 전체통계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본안판결이 있는 사건은 628건<sup>27)</sup>이다. 이 중에서 권리자가 패소한 사건은 519건이고, 승소한 사건은 109건으로 평균 승소율은 17.4%에 불과하다.<sup>28)</sup>



〈권리자 승소율〉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특허권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비침해)이다. 1심 본안판결 중 특허권자가 패소한 사건 519건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특허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패소한 경우가 25%, 상대방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패소한 경우가 58%이다. 한편 특허권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비침해이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도 13%에 이른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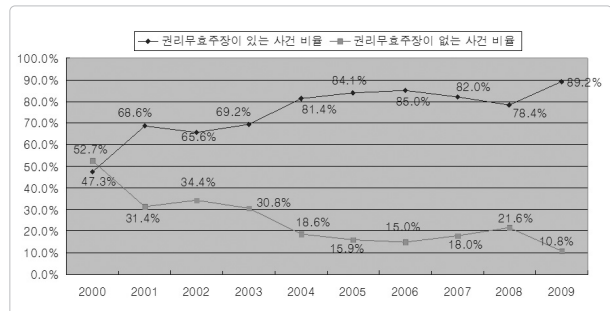
〈권리자 패소 사유〉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 진행 중에 항변으로서 특허무효를 주장(무효항변)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일본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침해소송 진행 중 무효항변·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비율은 2000년 47.3%에서 2009년 89.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무효주장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권리무효주장이 있는 본안사건	35	70	59	45	57	53	34	41	29	33	456
권리무효주장이 없는 본안사건	39	32	31	20	13	10	6	9	8	4	172
본안사건 합계	74	102	90	65	70	63	40	50	37	37	628

〈특허권 무효주장이 있는 침해소송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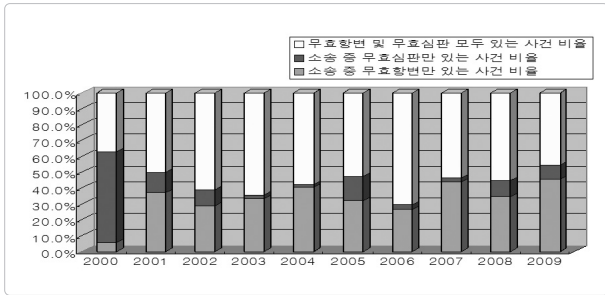


침해소송 중 권리무효의 주장 추이

무효항변만을 이용하여 무효주장 하는 경우는 2000년 5.7%로 매우 드물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45.5%로 늘었다. 이렇게 최근 무효항변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2000. 4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킬비 사건 판결에서 특허에 무효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였고, 2005. 4월 시행된 일본특허법 제104조의3 제1항이 특허가 무효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신설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무효심판만을 이용하여 무효주장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사건의 절반 정도는 무효항변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을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무효시키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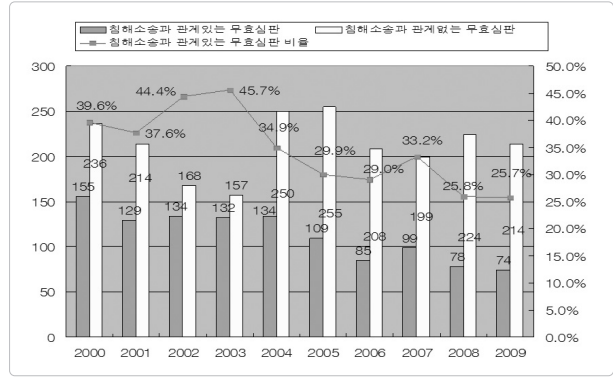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무효항변만 있는 사건 및 비율	2 5.7%	26 37.1%	17 28.8%	15 33.3%	23 40.4%	17 32.1%	9 26.5%	18 43.9%	10 34.5%	15 45.5%
무효심판만 있는 사건 및 비율	20 57.1%	9 12.9%	6 10.2%	1 2.2%	1 1.8%	8 15.1%	1 2.9%	1 2.4%	3 10.3%	3 9.1%
무효항변 및 무효심판 모두 있는 사건 및 비율	13 37.1%	35 50.0%	36 61.0%	29 64.4%	33 57.9%	28 52.8%	24 70.6%	22 53.7%	16 55.2%	15 45.5%
권리무효주장이 있는 사건 합계	35	70	59	45	57	53	34	41	29	33

〈무효항변 및 무효심판 이용 비율〉

일본특허청이 2000년~2009년에 처리한 특허·실용신안 무효심판은 연평균 325건이다. 이 중 특허침해소송과 관련이 있는 무효심판은 연평균 113건(34.7%)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45.7%이었으나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9년에 25.7%로 낮아졌다. 이는 최근에 당사자들이 법원에서의 무효항변을 특허청에서의 무효심판보다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특허청과 법원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무효판단을 한 경우 견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처리된 특허무효주장이 포함된 침해소송 81건을 분석하였다. 특허무효여부에 대해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결과는 79%(64건)에 대해 일치하였다. 판단결과가 서로 다른 사건은 17건이었는데, 이 중 6건은 특허청이 먼저 무효라고 심결했음에도 재판



〈무효심판 중 침해소송과 관계있는 무효심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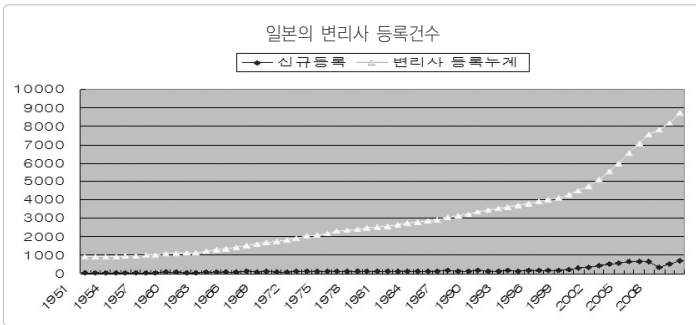
부가 뒤늦게 유효라고 판결한 경우이고, 나머지 11건<sup>30)</sup>은 특허청이 유효라고 심결 했음에도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경우이다. 한편, 위 사례 81건 중 특허청에 제출한 무효증거와 법원에 제출한 무효증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54건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10건(19%)의 판단결과가 서로 달랐다.

## V. 일본의 변리사 등록건수

지재권 출원, 심판,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이 변리사이다. 일본 변리사법 제7조는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2)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3)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사관으로 심판·심사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가 소정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변리사의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의 변리사 신규등록 건수는 716건이었고, 총 등록누계건수는 8,713건이었다. 8,713명 중 지역별로는 도쿄에 5,007명(57.5%)이 소재하고 있고,

27) 참고로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09년6월까지 특허·실용신안 민사소송 본안판결은 413건이었다(출처: 관할집중 방향수립을 위한 특허소송 판결 현황분석, 특허청, 2011).  
 28)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한국특허청의 위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민사소송 사건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26%(106건/408건)이다.  
 29) 한국특허청의 위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제심 민사소송의 원고 패소건(200건) 중 특허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가 31.7%(95건/300건)이다.  
 30) 11건 중 특허청이 먼저 심결한 사건은 8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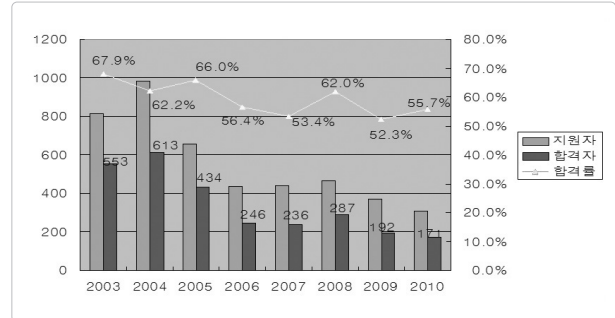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오사카에 1,395명(16.0%)이 소재하고 있다.<sup>31)</sup> 한편 일본변리사법 제37조는 변리사가 특허업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특허업무법인 수는 138개이다.



연도	신규등록	말소건수	변리사 등록누계
1951	35	132	929
1960	83	64	1,089
1970	101	25	1,763
1980	118	58	2,536
1990	174	56	3,342
2000	303	78	4,503
2001	353	80	4,776
2002	424	79	5,121
2003	529	102	5,548
2004	559	105	6,002
2005	665	115	6,552
2006	642	133	7,061
2007	637	127	7,571
2008	370	135	7,806
2009	535	158	8,183
2010	716	187	8,713

〈일본의 변리사 등록현황〉

한편, 일본변리사법 제6조의2는 변리사 중 “특정침해소송대리 업무시험(변리사법 제15조의2제1항)”에 합격하고 등록된 자는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지재권침해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sup>32)</sup>하고 있다. 특정침해소송대리 업무시험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합격률은 60%가량이고, 누적 합격자수는 2,732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변리사법의 규정<sup>33)</sup>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권만 인정되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 합격률〉

## VI.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2년부터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여,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창설 및 지재권 소송의 관할집중 등 혁신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재권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적 종합육성 전략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2. 11

31)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변리사 등록자는 6,5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5,141명(78.1%), 경기지역이 417명(6.3%)이다.

32) 일본 변리사법 제6조의2(업무)

① 변리사는 제15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는, 특정침해소송에 관하여 변호사가 동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기일에 출석하는 때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리사는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다.

33) 우리나라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특허 Q&A

## Q.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중국(CN), 대한민국(KR), 스페인(ES),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총 13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일본특허청(JP), 호주특허청(AU)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되, 일본특허청을 예비심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 Q.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34조 보정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보정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를 이용하

며, 의견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의견(소명)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고찰 및 사례연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 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보자.



박 시 영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 I. 서론

### II.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1.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 가.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
  - 나.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과 비교
2.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 가.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관련 심사기준
  - 나.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비교

### III.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사례

1.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사례
  - 가. 신규성이 부정된 사례
  - 나. 신규성이 인정된 사례
2.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 가.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 IV. 결론

## III.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사례

###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 사례

가. 신규성이 부정된 사례 :  
스퍼터링 타겟 및 투명 도전막

#### (1) 출원발명

#####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1 : 산화 인듐과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지는  $In_2O_3(ZnO)_m$  [단, m은 2 내지 7의 정수이다.]으로 표시되는 육방정 층상 화합물을 함유하며,  
구성요소 2 : 또한 +4가 이상의 원자를 갖는 제3원소의 산화물을 0.01 내지 0.2원자% 함유하는 스퍼터링 타겟.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스퍼터링 타겟에 함유되는 +4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의 산화물의 비율은 0.01 내지 1원자%이다. 이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 비율을 이러한 범위 내로 함으로써 스퍼터링 타겟의 부피 저항률을 충분히 낮게 하고, 즉, 타겟을 사용하여 제막할 때의 이상 방전이나 타겟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7m\Omega \cdot cm$  이하, 바람직하게는  $5m\Omega \cdot cm$  이하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타겟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 도전막은 옥살산 등의 약산에 의해서 용이하게 에칭 가공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4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의 산화물의 비율이 0.01원자% 미만이면, 스퍼터링 타겟의 부피 저항률을 충분히 낮게 함으로 억제할 수 없고, 또한 이 제3원소 산화물의 비율을 1원자%를 초과할 때까지 증대시키면, 그 스퍼터링 타겟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 도전막은 옥살산 등의 약산에 의한 에칭 가공을 실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2) 비교대상발명

청구항 2

일반식  $In_mO_3(ZnO)_m$  ( $m=2\sim 7$ )으로 표시되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을 포함하고, 더욱이 전체 양이온원소에 대해서 20 at% 이하의 3가 이상의 원자가를 가지는 제3원소의 산화물을 포함하고, 한편 In과 Zn의 원자비  $[In/(In+Zn)]$ 가 0.2~0.9인 산화물의 소결체로 이루어지고, 체적 저항률이  $10\sim 2 \Omega c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타겟 T2는, 상기 타겟 T1에 있어서 산화물의 소결체가 상기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3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예를 들면, Al, Zr, Ga, Ge, Sn, Ti, Si)의 산화물을 전체 양이온 원소(cation)에 대해서 20 at% 이하의 비율로 함유하고 있는 점에서만, 상기 타겟 T1과 다르다. 본 발명의 타겟 T2에 있어서, 전체 양이온원소에 대한 제3원소의 비율을 20 at% 이하로 한정하는 이유는 20 at%를 초과하면 이 타겟으로부터 얻어지는 투명 도전막에 있어서 이온의 산란이 일어나 도전성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이다. 제3원소의 비율은 0.1~15at%가 바람직하고, 0.5~10at%가 특히 바람직하다.

(3) 판단

구성요소 2는 '+4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의 산화물을 0.01 내지 0.2원자% 함유하는 스

퍼터링 타겟' 인데, 이는 비교대상 발명의 '전체 양이온 원소에 대해서 20 at% 이하의 3가 이상의 원자가를 가지는 제3원소 산화물을 포함하는 타겟'에 대응된다.

비교대상발명에는 3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의 예로서 'Zr, Ge, Sn, Ti, Si'가 기재되어 있고, 위 원소들은 +4가 원소들이므로, 양 구성은 +4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 산화물을 함유하는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점에서 구성이 같고, 구성요소 2의 제3원소 산화물의 수치범위인 0.01 내지 0.2원자%는 비교대상발명의 제3원소 산화물의 수치범위인 전체 양이온 원소에 대해서 20at% 이하에 포함되므로, 양 구성은 제3원소의 산화물 함유 비율에 있어서도 구성이 같다.

조성성분, 조직상태는 동일하고 조성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피 저항률이 낮은 합금의 성질과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수치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에서 산화아연·산화인듐계 화합물에 3가 이상의 제3원소 산화물을 첨가함에 있어, 부피 저항률이나 에칭 성능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제3원소 산화물의 함량비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부피 저항률 내지 에칭 성능

이 우수한 수치범위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제3원소 산화물의 수치한정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수치한정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 중 에칭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효과에 대하여는 비교대상발명에는 위와 같은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화합물의 성분이 동일하고, 그 조성범위, 조직상태가 동일범주 내에 있으며, 스퍼터링 타겟으로 용도가 동일한 경우 그 작용효과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 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를 보더라도 수치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임계치라는 것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조성성분, 조성범위가 동일하므로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한치 및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등으로부터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나. 신규성이 인정된 사례 : 지르코늄 합금<sup>20)</sup>

### (1) 출원발명

조성성분	조성범위(중량%)
Sn	1.0
Fe	0.1
Cr	1.2
Zr	잔부

### (2) 비교대상발명

조성성분	조성범위(중량%)		
	개시내용	실시예 10	실시예 15
Sn	0.02 내지 5.14	1.22	1.18
Fe	0.04 내지 0.57	0.34	0.34
Cr	0.04 내지 2.76	0.56	2.76
Zr	잔부	잔부	잔부

### (3) 판단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유럽 항고 심판소의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넓은 수치범위로부터 좁은 하위의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신규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핀다.

### 첫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좁은지 여부

출원발명은 단 하나의 조성범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좁다고 인정된다.

### 둘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공지의 선호

#### 된 부분과 충분히 다른지 여부

Sn 함량이 근접한 비교대상발명의 실시예 10, 15의 경우 Fe는 3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 Cr은 대략 절반이거나 2배 이상이므로, 선택된 하위의 범위는 공지의 선호된 부분과 충분히 다르다고 인정된다.

셋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합목적적인 선택인지 여부

출원발명은 단괴 부식 저항성과 경수로 방사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의 우수한 조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비교대상발명은 단괴 부식 저항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경수로 방사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포함하는 우수한 조합을 암시하는 어떠한 기술적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출원발명은 합목적적인 선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신규성(및 진보성)이 인정된다.

##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 가.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1) 사례 1 : 내식성이 우수한 선박용 강재

##### (가) 출원발명

######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C 0.04 내지 0.18%이하, “%”는 질량%를 의미한다), Si 0.1 내지 0.50%, Mn 0.10 내지 1.8%, Al 0.05 내지 0.40%, Cu 0.05 내지 4.00%, Cr 0.05 내지 4.50%, Ni 0.05 내지 4.50% 및 Ti 0.008 내지 0.20%를 각각 함유하는 외에, P 0.020% 이하(0% 포함) 및 S 0.010% 이하(0% 포함)로 각각 억제하고, Ca 0.0010 내지 0.015% 및 Mg 0.0005 내지 0.020%중 1종 이상을 추가로 함유하고, 잔부가 Fe 및 불가피한 불순물로 이루어지며, Cr의 함유량 [Cr]과 Al의 함유량 [Al]의 비의 값[Cr]/[Al]이 1 내지 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식성이 우수한 선박용 강재.

##### (나) 비교대상발명

#### 청구항 4

C 0.01~0.25%, Si 0.05~0.50%, Mn 0.05~2.0%, Al 0.005~0.10%, Cu 0.01~2.00%, Ni 0.01~4.0%, Cr 0.01~2.0%, Mo 0.01~1.0%, W 0.01~1.0%의 1종 이상을 추가 함유, Ti 0.005~0.020%, Nb 0.002~0.10%, V 0.01~0.10%, B 0.0003~0.0050%중에서 1종 이상을 추가 함유, P 0.10%이하, S 0.001~0.10%, Mg 0.0002~0.0150%, Ca : 0.0002~0.0100%, REM 0.0002~0.0100%의 1종 이상을 추가 함유하고, 잔부가 Fe 및 불가피한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용 내식강.

#### (다)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Cr 0.05 내지 4.50%, Al 0.05 내지 0.40%를 함유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도 Cr 0.01~2.0%, Al 0.005~0.10%를 함유하고 있으며, 두 발명의 조성범위는 겹친다.

조성성분, 조직상태는 동일하고 조성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내식성이라는 합금의 성질과 선박용 강재라는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함.

비교대상발명의 Cr 0.01~2.0%, Al 0.005~0.10% 중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Cr과 Al의 함유량과 겹치는 조성범위는 Cr 0.05 내지 2.0%, Al 0.05 내지 0.10%인바,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의 Cr과 Al의 함유량의 비의 값을 계산하여 보면 1 내지 40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의 범위와 겹친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1 내지 50이고, 선행발명의 수치범위가 1 내지 40으로,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상위개념, 선행발명의 수치범위가 하위개념이므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도

있고, 선행발명이 출원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선행발명이 특허로 성립하기 위한 첫째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Cr과 Al의 함유량의 비의 값([Cr]/[Al])을 1 내지 50으로 수치한정한 것은 비교대상발명의 것과 겹칠 뿐만 아니라, 그 함유량의 비의 값을 경계로 하여 그 전과 후의 범위에 있어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가 생긴다는 등의 수치한정이 갖는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상한치 및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등으로부터 입증되지 못하였음.

(2) 사례 2 : 코발트, 니켈 및 규소를 함유하는 구리 합금

(가)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1 : 니켈 1 내지 2.5중량%, 코발트 0.5 내지 2.0중량%, 규소 0.5 내지 1.5중량% 및 잔여량의 구리 및 불가피한 불순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성요소 2 :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이 1.7 내지 4.3중량%이며, 니켈 대 코발트 중량비는 0.5:1 내지 5:1이고, (Ni+Co):Si의 중량비가 3.5:1 내지 6:1이고,  
 구성요소 3 : 전기 전도도가 40% IACS를 초과하고, 항복 강도가 95 ksi를 초과하며, 양호

한 방식의 굴곡 및 불량한 방식의 굴곡 둘 다에 대해 두께(t)의 함수로서의 최소 굴곡 반경(mbr)이 4t 이하이고, 950°C에서의 용체화 후의 평균 입자 크기가 20 $\mu$ m 이하인, 가공된 구리 합금.

(나) 비교대상발명

강도가 높고 도전율과 내열성이 우수하며, 가공성이나 도금 밀착성이 양호하고, 땀납과의 계면 강도의 경시 열화를 일으키지 않는 반도체 기기용 구리합금에 관한 것으로, 'Ni 1.0~4.0중량%, Si 0.2~1.0중량%, Ag 0.0005~0.5중량%'를 함유하고, 또한 Zn, Mn, Mg, Sn, Sb, Cr, B, Y, 희토류 원소(Re), Co, Ti, Zr, V 중 어느 1종 또는 2종 이상을 합계 2.0중량% 이하를 함유하며, O<sub>2</sub> 함유량을 20ppm 이하, S함유량을 10ppm 이하로 하고, 잔부 Cu와 불가피한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기기용 구리합금.

(다) 판단

양 발명은 모두 강도, 전기 전도도 및 성형성이 우수한 구리 합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하다고 할 수 없다.

전기 전도도 및 성형성이라는 합금의 성질과 전기 접속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구리 합금이라는 용도가 동일하고 판단함.

구성요소 1 : 양 구성은 모두 구리합금에 니켈(Ni), 코발트(Co), 규소(Si), 구리(Cu) 및 불가피한 불순물이 함유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함유비율도 니켈의 경우 1~2.5중량%, 코발트의 경우 0.5~2.0중량%, 규소의 경우 0.5~1.0중량%에서 각 중복된다.

조성성분, 조직상태는 동일하고 조성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구성요소 2 : 비교대상발명은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 니켈 대 코발트의 중량비 및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 대 규소의 중량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성요소 1의 대응구성에 개시되어 있는 니켈, 코발트, 규소의 각 함유비율로부터 환산해보면, 비교대상발명도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이 1.0~6.0중량%, 니켈 대 코발트의 중량비가 0.5 이상,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 대 규소의 중량비가 1.0~30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수치들을 비교해 보면, 구성요소 2의 각 수치범위는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 수치범위와 전부 중복되면서 이를 일정범위로 한정하고 있는바, 구성요소 2의 그와 같은 수치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비교하여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 '니켈 대 코발트의 중량비' 및 '(Ni+Co)/Si'의 구체적인 수치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소 2가 한정된 수치범위의 상하한의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 차이가 있다고

20) 유럽 항고심판소 심결, T0718/02, 22. 2. 2005.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2의 수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상한치 및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등으로부터 입증되지 못하였음.

구성요소 3 :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은 구성요소 1, 2를 모두 만족하는 구리 합금이면, 구성요소 3에서 특정한 물성, 즉 40% IACS를 초과하는 전기 전도도, 95ksi를 초과하는 항복 강도, 4 이하의 최소 굴곡 반경 및 950℃에서의 용체화 후 20 $\mu$ m 이하인 평균 입자 크기의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위 구성요소 1, 2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요소 1, 2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리 합금의 성분 원소가 니켈, 코발트 및 규소로서 동일하고, 니켈, 코발트 및 규소의 각 함량과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 '니켈 대 코발트의 중량비' 및 '(Ni+Co)/Si'의 각 수치범위가 서로 중복되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중 구성요소 1, 2를 만족하는 범위의 구리 합금은 구성요소 3에서 특정한 물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리 합금은 열간 압연(壓延)을 통해 밀링된 판을 냉간 압연시킨 다음 용체화 열처리하고 다시 급냉 처리한 후 시효 어닐링(annealing) 및

냉간 압연을 시켜 제작되는데, 비교대상발명의 구리 합금 역시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을 실시한 후 용체화 담금질 처리를 하고 냉간 가공과 시효 처리(시효 어닐링)를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제작되므로, 양발명의 구리 합금을 제작하는데 적용되는 공정 역시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양 발명은 구리 합금의 성분이 동일하고, 그 함량과 '니켈과 코발트의 전체 함량' 등의 수치범위도 중복되며, 그 제작공정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그 수치범위가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양 발명의 물성과 작용효과, 즉 전기 전도도, 항복 강도 및 성형성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성분,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동일 제조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동일 조직상태가 얻어질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하거나, 성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용도의 적성이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움.

## 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

### 스퍼터링 타겟 및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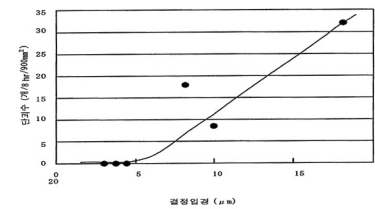
#### (1) 출원발명

#####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1 : 산화인듐 및 산화아연을 필수적으로 함유하여 이루어지는 스퍼터링 타겟으로서, In/(In+Zn)으로 나타내는 원자비가 0.75 내지 0.97이고, In<sub>2</sub>O<sub>3</sub>(ZnO)<sub>m</sub>(여기서, m은 2 내지 20의 정수이다)으로 나타내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을 함유하며,  
구성요소 2 : 상기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mu$ m 이하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타겟.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결정 입경의 크기를 소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타겟 표면에 발생하는 요철의 크기를 제어하고, 결과적으로 단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도면으로부터, 단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을 5 $\mu$ m 이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결정 입경을 4 $\mu$ m 이하로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단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비교대상발명

##### 청구항 2

일반식 In<sub>2</sub>O<sub>3</sub>(ZnO)<sub>m</sub> (m=2~7)으로 표시되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을 포함하고, (중략) 한편 In와 Zn의 원자비 [In/(In+Zn)]가 0.2~0.9인 산화물의 소결체로 이루어지고, 체적 저항률이 10~2  $\Omega$  c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타겟 T1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식 In<sub>2</sub>O<sub>3</sub>(ZnO)<sub>m</sub> (m=2~7)으로 나타내지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을 포함하고, 또한 In와 Zn의 원자비 [In/(In+Zn)]가 0.2~0.9인 산화물의 소결체로 구성된다고 하는 요건 (i)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도전성 및 내습성이 우수하다. 또한 본 발명의 타겟 T1은, 상술한 바와 같이 체적저항률이 10~2 $\Omega$  cm 이하라고 하는 요건 (ii)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이 타겟을 이용하는 막 제조시에 이상 방전이나 타겟의 균열의 문제가 없다.

산화인듐 및 산화아연의 평균입자 지름은 0.01~10 $\mu$ m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0.05~5 $\mu$ m, 특히 바람직하게는 0.1~5 $\mu$ m이다.

#### (3) 판단

구성요소 2는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크기를 수치로서 한정된 경우이

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와 같은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효과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성요소 2의 기술적 의의와 관련하여, ‘타겟 중의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mu\text{m}$  이하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정 입경이 5  $\mu\text{m}$ 를 초과하면, 스퍼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단괴가 발생하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mu\text{m}$  보다 커지면 스퍼터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단괴가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결정 입경의 크기를 5  $\mu\text{m}$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임계적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면을 바탕으로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크기와 단괴 발생 수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가로축에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크기( $\mu\text{m}$ )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에는 단위면적 및 단위 스퍼터링 시간 당 발생한 단괴수(개/8hr/900  $\text{mm}^2$ )를 나타내고 있다. 도면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mu\text{m}$  이하이면 발생한 단괴수가 0개/8hr/900  $\text{mm}^2$ 인데 반해,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mu\text{m}$ 을 초과하면, 단괴의 발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8 내지 32개/8hr/900  $\text{mm}^2$ 의 단괴가 발생한다. 즉, 도면으로부터, 단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을 5  $\mu\text{m}$  이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결정 입경을 4  $\mu\text{m}$  이하로 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단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수치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적인 자료나 수치를 토대로 비교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있다.

수치한정 사항을 경계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고,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상한치가 임계치라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등으로부터 입증되었다고 보았음.

#### IV. 결론

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도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 볼 수도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에서 특허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과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을 적절히 보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넓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로부터 좁은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의 신규성 판단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유럽 항고심판소의 판단기준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이나,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더라도 별다른 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선택된 수치한정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선택가능한 수준인지 다시 한 번 주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합금발명의 실제사례를 접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합금분야의 특허요건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다양한 유형별로 분류 및 정리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2. 1 |

#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 소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 태 수  
(주)삼성전자 변리사 · 선임연구원

## I. 서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하에서, “2010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이라 칭한다)을 2009년 12월 21일에 공표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사건의 운영 기준으로, 2001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된다. 이하에서, 특허청구범위 확정과 침해판단의 원칙 등 침해소송에서의 중요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본다.(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디자인 침해분쟁에 관한 사법해석으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 II.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 (1) 사법해석 제1조

第一条 人民法院应当根据权利人主张的权利要求，依据专利法第五十九条第一款的规定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权利人在一审法庭辩论终结前变更其主张的权利要求的，人民法院应当准许。

权利人主张以从属权利要求确定专利权保护范围的，人民法院应当以该从属权利要求记载的附加技术特征及其引用的权利要求记载的技术特征，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

제1조 ①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근거하여, 특허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권리자는 제1심법원 변론종결 전에 그 주장하는 청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준허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가 주장하는 종속항으로부터 특허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종속항이 기재하는 부가기술특징 및 그 인용하는 청구항이 기재하는 기술특징으로써, 특허권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명세서 및 첨부도면은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근거로 특허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특허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공시성을 증대시키고 특허청구범위의 부당한 확대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속항의 해석까지 제1조에서 구태여 규정하는 것은 청구항 해

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분명한 사법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제도의 기능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 통상의 기술자 기준

### (1) 사법해석 제2조

第二条 人民法院应当根据权利要求的记载，结合本领域普通技术人员阅读说明书及附图后对权利要求的理解，确定专利法第五十九条第一款规定的权利要求的内容。

제2조 인민법원은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하여,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및 첨부도면을 읽은 후의 청구항의 이해를 결합하여, 특허법 제59조 제1항 규정의 청구항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청구항을 해석하는 주체적 기준으로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청구항의 용어 등을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며, 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여 특허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구항 용어의 해석

### (1) 사법해석 제3조

第三条 人民法院对于权利要求，可以运用说明书及附图、权利要求书中的相关权利要求、专利审查档案进行解释。说明书对权利要求用语有特别界定的，从其

特別界定。

以上述方法仍不能明确权利要求含义的，可以结合工具书、教科书等公知文献以及本领域普通技术人员的通常理解进行解释。

제3조 ① 인민법원은 청구항에 대하여, 명세서 및 첨부도면, 특허청구범위 중의 관련 청구항, 특허심사서류를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명세서에 청구항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한정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한정지를 따른다.

② 상술한 방법으로도 여전히 청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참고 도서, 교과서 등 공지문헌 및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인 이해를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해석기준의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즉, 청구항의 용어에 대하여 명세서에 특별한 한정지나 정의가 있는 경우, 먼저 그 한정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명세서, 첨부도면, 특허청구범위, 특허심사서류 등의 내부증거(intrinsic evidence)를 먼저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외부증거(extrinsic evidence), 즉 참고 도서 등을 활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내부증거(intrinsic evidence)가 외부증거(extrinsic evidence)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 (1) 사법해석 제4조

第四条 对于权利要求中以功能或者效果表述的技术特征，人民法院应当结合说明书和附图描述的该功能或者效果的具体实施方式及其等同的实施方式，确定该技术特征的内容。

제4조 청구항에서 기능 또는 효과로서 기술한 기술특징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명세서 및 첨부도면에 기술된 당해 기능 또는 효과의 구체적인 실시방식 및 균등한 실시방식을 결합하여, 당해 기술특징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 가. 심사지침 규정

###### ① 허용 여부

통상적으로, 물건 청구항에 있어서, 기능 또는 효과의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정(기능적 한정)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다만, 어떤 기술특징이 구조 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기술특징에 대하여 구조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것이 기능 또는 효과의 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것만 못하며, 당해 기능 또는 효과가 명세서 중에서 규정하는 실험, 조작 또는 기술영역에 속하는 관용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확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능 또는 효과의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sup>1)</sup>.

###### ② 청구항 기재방법

당해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그 기능이 상세한 설명 중에 제공되지 않은 다른 대체방식을 채용하여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그 기능적 한정지 포함하는 방식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sup>2)</sup> 결국, 기능식 청구항은 그

기능을 실현하는 모든 실시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방식에 의하여도 동일한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는 한국이나 미국 등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특허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단 특허권이 등록된다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한국이나 미국과 동일하게,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를 기준으로 확정되게 된다. 실무적으로, 중국에서 기능식 청구항이 등록되기 어렵고, 청구항 해석의 기준도 실시예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능식 청구항을 활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공중에 헌납된 기술

#### (1) 사법해석 제5조

第五条 对于仅在说明书或者附图中描述而在权利要求中未记载的技术方案，权利人在侵犯专利权纠纷案件中将其纳入专利权保护范围的，人民法院不予支持。

제5조 명세서 또는 첨부도면 중에 기재되었지만 청구항에서 기재되지 않은 기술방안에 대하여,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에서 그 부분을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또는 첨부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공중에 헌납된 기술로 보아야 한다는 소위, Doctrine of dedication을 확인해주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비추어볼 때, 특허

청구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Doctrine of dedicat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금반언에 의한 제한

#### (1) 사법해석 제6조

第六条 专利申请人、专利权人在专利授权或者无效宣告程序中，通过对权利要求、说明书的修改或者意见陈述而放弃的技术方案，权利人在侵犯专利权纠纷案件中又将其纳入专利权保护范围的，人民法院不予支持。

제6조 특허출원인,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 절차 또는 무효선고 절차에서, 청구항, 명세서에 대한 보정 또는 의견진술서를 통하여 포기한 기술방안에 대하여,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다시 그 부분을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제한으로서 금반언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판례에서도 인정되던 금반언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법원에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1)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二章 3.2.1，2010년.  
2) 专利审查指南，第二部分第二章 3.2.1，2010년. 참조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및 균등론

### (1) 사법해석 제7조

第七条 人民法院判定被诉侵权技术方案是否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应当审查权利人主张的权利要求所记载的全部技术特征。

被诉侵权技术方案包含与权利要求记载的全部技术特征相同或者等同的技术特征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被诉侵权技术方案的技术特征与权利要求记载的全部技术特征相比，缺少权利要求记载的一个以上的技术特征，或者有一个以上技术特征不相同也不等同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没有落入专利权的保护范围。

제7조 ① 인민법원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권리인이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청구항이 기재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피소된 기술방안의 기술특징과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상호 비교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을 결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하지도 않고 균등하지도 않은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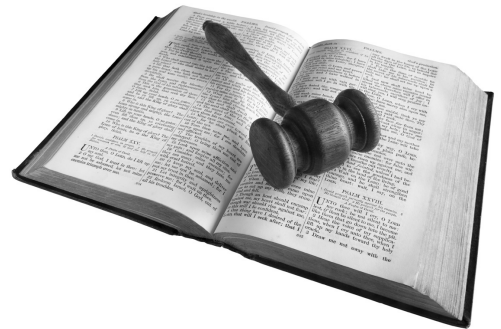
#### 가. 다여지정의 원칙의 폐기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을 천명한 것으로, 외국의 특허제도에 비추어 볼 때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규정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다여지정의 원칙(多余指定原则)이라는 생소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여지정의 원칙이란 청구항에 필수기술특징이 아닌 발명의 완성과 무관한 부가적 기술특징을 기재한 경우, 피고의 침해물품이 부가적 기술특징을 포함하지 않아도 특허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특허법 제5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고인민법원은 다여지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법해석 제7조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제 다여지정의 원칙은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균등론

제7조 제2항에서는 피소된 침해물품이 청구항이 기재한 모든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균등론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균등론은 2001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sup>3)</sup>(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인정되어 온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준이다.



## Ⅲ. 특허 실시행위

### 부품에 관한 실시행위

(1) 사법해석 제12조

第十二条 将侵犯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作为零部件，制造另一产品的，人民法院应当认定属于专利法第十一条规定的使用行为；销售该另一产品的，人民法院应当认定属于专利法第十一条规定的销售行为。  
 对于前两款规定的情形，被诉侵权人之间存在分工合作的，人民法院应当认定为共同侵权。

제1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부품으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의 사용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하며, 당해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의 판매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② 두 개의 전항 규정의 상황에서, 권리침해 피소인 간에 분담하여 합작한 경우, 공동침해로서 인정해야 한다.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법 제11조는 “생산경영목적에 위해 그 특허물건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거나 당해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부품인 경우, 완성품을 제조하는 것은 특허법 제11조의 사용행위이고,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 제11조의 판매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행위**

(1) 사법해석 제13조

第十三条 对于使用专利方法获得的原始产品，人民法院应当认定为专利法第十一条规定的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对于将上述原始产品进一步加工、处理而获得后续产品的行为，人民法院应当认定属于专利法第十一条规定的使用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제13조 ① 특허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1차 물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의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으로 인정해야 한다.

② 상술한 1차 물건을 한 단계 가공, 처리하여 2차 물건을 획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의 “당해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법 제11조 제1항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 특허법 및 미국 특허법과 동일하

3) 중국특허법 364면 참조, 최정 외 3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2001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서 균등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①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명세서 및 도면은 권리청구범위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의 의미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권리청구범위에서 기재한 필수 기술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필수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이 확정된 범위까지 포함된다.  
 ② 균등특징(等同特征)은 기재된 기술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이 영역의 통상의 기술자가 창조적인 노력을 거치지 않고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 IV. 비침해의 항변

### 공지기술의 항변

#### (1) 사법해석 제14조

第十四条 被诉落入专利权保护范围的全部技术特征, 与一项现有技术方案中的相应技术特征相同或者无实质性差异的, 人民法院应当认定被诉侵权人实施的技术属于专利法第六十二条规定的现有技术。

제14조 ①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피소 기술특징이 어느 하나의 선행기술 중의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침해자가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법 제62조 규정의 현유기술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2009년 제3차 개정 특허법 제62조는 “특허침해 분쟁에서, 권리침해의 피소자(被控侵权人)가 그 실시하는 기술 또는 디자인이 현유기술 또는 현유디자인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지기술의 항변을 특허법 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것을 성문화한 것이다. 현유기술은 특허법 제22조 제5항에서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알려진 기술을 근거로 공지

기술의 항변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실용신안권의 경우 무심사 등록되는데,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공지기술의 항변을 이용하여 침해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선사용권의 항변

#### (1) 사법해석 제15조

第十五条 被诉侵权人以非法获得的技术或者设计主张先用权抗辩的, 人民法院不予支持。

有下列情形之一的, 人民法院应当认定属于专利法第六十九条第(二)项规定的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

(一) 已经完成实施发明创造所必需的主要技术图纸或者工艺文件;

(二) 已经制造或者购买实施发明创造所必需的主要设备或者原材料。

专利法第六十九条第(二)项规定的原有范围, 包括专利申请日前已有的生产规模以及利用已有的生产设备或者根据已有的生产准备可以达到的生产规模。先用权人在专利申请日后将其已经实施或作好实施必要准备的技术或设计转让或者许可他人实施, 被诉侵权人主张该实施行为属于在原有范围内继续实施的, 人民法院不予支持, 但该技术或设计与原有企业一并转让或者承继的除外。

제15조 ① 피소침해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술 또는 디자인으로 선사용권의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9조 제2호 규정의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1. 발명창조를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주요한 기술도면 또는 공정문서를 이미 완성한 경우
2. 발명창조를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주요한 설비 또는 원재료를 이미 제조하거나 구매한 경우

③ 특허법 제69조 제2호 규정의 ‘원래의 범위’는,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있는 생산규모 및 이미 있는 생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미 있는 생산준비에 근거하여 생산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선사용권자가 특허출원일 이후에 이미 실시 또는 실시할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기술 또는 디자인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하고, 피소침해자는 해당 실시행위가 원래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기술 또는 디자인과 원래의 기업이 함께 양도되거나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2)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법 제69조 제2호에서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했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계속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 제15조는 특허법 규정의 법률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V. 침해배상액의 산정

### 사법해석 제16조

第十六条 人民法院依据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确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应当限于侵权人因侵犯专利权行为所获得的利益；因其他权利所产生的利益，应当合理扣除。  
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系另一产品的零部件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零部件本身的价值及其在实现成品利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제16조 ①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확정할 경우, 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에 한정해야 하며, 기타 권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발명, 실용신안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부품인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부품 자체의 가격 및 완성품의 이윤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작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권에 의하여 얻은 이익 외의 다른 것에 의하여 얻

4) 第二十条 人民法院依照专利法第五十七条第一款的规定追究侵权人的赔偿责任时，可以根据权利人的请求，按照 侵权人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赔偿数额。  
侵权人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可以根据权利人的专利产品因侵权所造成销售量减少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权利人销售量减少的总数难以确定的，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可以视为侵权人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  
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은 이익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2007년 1심판결이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된 슈나이더(Schneider) 판례에서 법원은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은 침해제품의 판매개수에 영업이익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여 약 570억원이라는 상당한 높은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제20조 제3항<sup>4)</sup>을 참조하면, 침해자가 침해로 인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침해자에게는 매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슈나이더 판례에서 상당히 높은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온 것도 매출액의 약 40%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실시료가 매출액의 5%로 이하로 책정되며, 슈나이더 판례에서 원고는 실용신안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매출액의 40%를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슈나이더 판례와 2001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특허권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므로 부당한 면이 있다. 사법해석 제16조는 기타 권리로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등, 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2010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2001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VI. 생산방법의 추정

### 사법해석 제17조

第十七条 产品或者制造产品的技术方案在专利申请日以前为国内外公众所知的, 人民法院应当认定该产品不属于专利法第六十一条第一款规定的新产品。

제17조 물품 또는 물품을 제조하는 기술방안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물품이 특허법 제61조 제1항 규정의 ‘새로운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특허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특허침해분쟁이 새로운 물건의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 특허법 제129조 및 일본 특허법 제104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sup>5)</sup>. 한국, 일본, 중국의 침해소송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그 물건이 공지된 경우에는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화학 또는 바이오 분야의 발명과 그 이외의 발명은 구체적인 판단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VII. 특허 비침해 확인의 소

### 사법해석 제18조

第十八条 权利人向他人发出侵犯专利权的警告，被警告人或者利害关系人经书面催告权利人行使诉权，自权利人收到该书面催告之日起一个月内或者自书面催告发出之日起二个月内，权利人不撤回警告也不提起诉讼，被警告人或者利害关系人向人民法院提起请求确认其行为不侵犯专利权的诉讼的，人民法院应当受理。

제18조 권리자가 타인에게 특허권 침해의 경고를 발송하고, 경고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을 통하여 권리자에게 소권을 행사할 것을 최고한 경우, 권리자가 당해 서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또는 서면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자가 경고를 철회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그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을 수리해야 한다.

**사법해석에 대한 검토**

중국에서 특허침해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침해의 경고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허권 침해의 경고로 인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불안한 지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이에 경고를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VIII. 결어**

2010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특허실시행위, 비침해 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중국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법해석의 규정들이 그 동안 판례로 축적되어 온 침해소송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를 정리하여, 국제 동향에 부합할 정도까지 이른 것이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해석을 참고하여, 중국 특허소송에서 한국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침해소송에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2. 1 |



5) 미국 특허법 제295조를 살펴보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생산방법을 사용할 실질적 가능성과 물건의 제조에 사용된 방법을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U.S.C 295 Presumption: Product made by patented process In actions alleging infringement of a process patent based on the importation, sale, offered for sale, or use of a product which is made from a process patent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 court finds—  
 (1) that a substantial likelihood exists that the product was made by the patented process, and  
 (2) that the plaintiff has made a reasonable effort to determine the process actually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product and was unable so to determine, the produc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so made, and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at the product was not made by the process shall be on the party asserting that it is not so made.

# 오픈마켓에서의 침해행위 시 오픈마켓 운영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2006가합46488 판례)

**【사실관계】**

갑은 등산용품에 대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K2”의 국내 등록상표권자이다. 을은 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서 “K-2 Matsin”의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품을 병이 관리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 (1) 갑의 상표가 국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2) 갑이 병에게 을의 행위를 방치함을 이유로 병에게 부정경쟁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가?



손 지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I. 설문 1과 관련하여

**1**

**서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일 반을 규제할 수 있는 소위 일반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복수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만을 한정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국 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품주체혼동행위<sup>1)</sup> 및 영업주체혼동행위<sup>2)</sup>로 규정하여 유명상 표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상표법은 보호범위를 정해진 틀 에 규정하여 정형적, 일률적인 보호를

피하기 때문에 상표법상 엄격한 요건을 객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표에 대 해서는 사용금지효를 인정하지 않는 반 면, 부정경쟁방지법은 혼동이 구체적으 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상 사용금지효가 인정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 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2**

**상품주체혼동행위**

(1) 의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

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주지상표 등 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의미한다.

## (2) 주지성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 및 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주지성은 침해 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 널리 인식될 것을 요하지만 인식범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걸칠 필요는 없다.

주지성에 대하여 상품종류나 성질, 거래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통설은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 소정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것과 주지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한다.<sup>3)</sup>

## (3) 상품표지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을 개별화하는 식별수단으로서의 상품표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명칭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표지나 상품 그 자체의 모방

은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3 본 판례의 태도

본 판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장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충분하며, 그 표장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태도이다<sup>4)</sup>.

또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

에 해당하고, 그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와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태도이다.

본 판례에서는 상기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갑의 “K2”상표는 등산용품에 대하여 이미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주지상표로서의 요건을 획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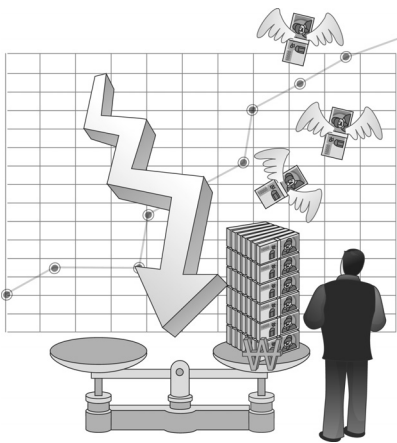
### 4 소결

본 판례에서는 “K2” 표장과 대비되는 을의 사용표장 “K-2 matsin”에서의 ‘K-2’ 부분은 다른 구성부분과 쉽게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고, “K2” 표장이 식별력을 취득한 거래실정상 자연스럽게 자타 상품 식별력을 가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기목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3) 최성우, OVA상표법, 한국특허아카데미, 483면  
 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7. 2. 5.자 96마 364 결정,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등 참조

는 요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K2” 포장과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한 ‘K-2’, ‘K2’ 부분을 포함한 을의 사용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갑의 포장 “K2”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의 대상이 되어 오픈마켓에서 을의 상표품의 사용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을은 자신의 침해행위에 따라 갑이 입게 된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 II. 설문 2의 해결

### 1 서설

문제는 갑이 을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사용금지효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

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오픈마켓의 운영자인 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는 최근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을 때에 상표권자의 효율적인 조치로서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갑의 주장

병은 을에게 병 운영의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판매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 운영의 오픈마켓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위한 광고와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상품판매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병이 을에게 부정경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며, 병이 부정경쟁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병이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피고가 평가한 ‘스타셀러샵’, ‘서비스우수샵’, ‘인기우수샵’ 등과 같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부정경쟁의 판매행위를 촉진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이 대형업체인 병의 신용을 신뢰하여 병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을의 부정경쟁행위를 촉진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을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을의 불법적인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으므로 병이 을의 부정경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을과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법원의 판단

판례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정해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태도이다.<sup>5)</sup>

본 판례는 판매자들의 부정경쟁행위가 병 운영의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자의 상품광고행위를 비롯하여 상품가격과 인도방법, 상품과 대금의 인도시기와 방법 등의 상품판매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결정되고, 병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즉, 병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판매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이 주장하는 병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담행위는 병이 오픈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본질적인 시설제공행위 내지는 영업행위여서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판

매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병의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행위이므로 병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갑의 “K2”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판매자들의 부정경쟁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판매자들의 부정경쟁행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판매자들과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태도이다.

또한, 본 판례는 더 나아가 병이 오픈마켓의 운영주체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오픈마켓의 특성상 오픈마켓에서는 수많은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그 판매상품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품질보증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판매자의 신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므로 판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판매자의 상품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러한 권리침해행위의 직접 주체도 아니고,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침해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만을 들어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해 판매자의 상품의 등록·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지를 일일이 검색하여 미리 삭제하는 등과 같이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부정경쟁행위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권리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침해행위의 발생 내지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침해행위의 발생 내지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권리침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해당 상품의 등록과 판매의 형태, 기간, 횟수, 오픈마켓 운영자가 관리자에 의해 권리침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해당 상품의 등록과 판매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한 판매중지 요청 등 구체적인 권리침해방지의 노력과 그와 관련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취한 조치의 내용, 피해자와 침해자 이외의 제3자가 볼 때에 해당 상품의 등록과 판매 등이 부정경쟁행위 등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4 소결

본 사건에서는 갑의 등록상표 “K2”가 형식적으로는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었고,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및 식별력 판단, 또한 갑의 등록상표와 을의 사용상표 간의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병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병의 주의의무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국내에서 유명한 주지상표를 위조한 상품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을 경우, 그 주지상표에 대한 주지성 및 식별력 판단이 명확하게 될 수 있고, 상표권자가 침해금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조한 행위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 11

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참조



## 버즈아이의 냉동법

알래스카 해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

## 발명역사 속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신라시대에 '석빙고'라는 곳에 얼음을 보관하여 1년 동안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조선시대에는 서울에 '동빙고'와 '서빙고'라는 얼음 창고를 만들어, 겨울내 언 한강의 얼음을 보관하였다가 궁중에서 요긴하게 사용한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얼음의 이용과는 다른 본격적인 '냉동법'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미국인 생물학자 '클래런스 버즈아이(Clarence Birdseye, 1886~1956)'였다. 미국 농무부의 생물표본 수집 담당 직원이던 버즈아이는 1923년 알래스카로 출장을 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클래런스 버즈아이

'아니! 이 물고기는 두 달 전의 향해 때 먹다가 남긴 것인데 어떻게 된 거지? 마치 이제 막 잡아 올린 것처럼 싱싱하다니!'

버즈아이는 추위로 붙어진 코를 비벼가며 그 물고기를 살피고 또 살폈다. 자신이 혹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자신의 손에 들린 물고기는 분명 두 달 전에 먹다 남긴 것이었다. 반토막의 물고기는 마치 유리에 성애가 낀 것처럼 하얗게 얼어 있었다. 순간, 버즈아이는 매섭게 차가운 겨울 날씨가 이 물고기를 퐁퐁 얼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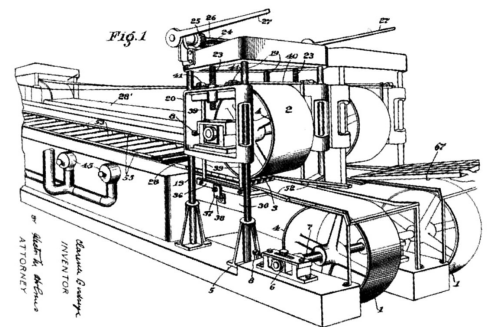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버즈아이는 토끼를 잡아서 신선도 실험에 착수했다. 종이상자에 양초를 입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칸을 만들어 토끼고기와 얼음을 차례차례 채워 넣었다. 조금 후 토끼고기는 얼어 붙어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차가워졌다. 버즈아이는 이렇게 해서 얼린 토끼고기와 얼리지 않은 토끼고기를 놓고 어떤 것이 먼저 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그 결과 얼리지 않은 토끼고기는 얼음을 갈아주며 보관한 토끼고기보다는 확실히 먼저 부패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1925년 버즈아이는 오랜 연구 끝에 급속 냉동기계를 발명했다.

그는 특허출원을 마치고 성능이 더 좋은 자동 냉동기계를 발명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으나 제너럴 푸드 사는 예외였다. 제너럴 푸드 사는 1929년 대공황이 찾아오기 직전 식품저장에 고심해 왔던 차에 버즈아이의 특허권을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인 2,2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 후 버즈아이는 풍족한 삶을 누리다가 70세로 사망할 때까지 250여 건의 특허를 남겼다. 버즈아이로부터 식품냉동법 특허를 사들인 제너럴 푸드 사 역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버즈아이가 개발한 급속냉동장치 설계도(1930)

#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건강하게 삽시다 \_ 건강한 다이어트로 새해소망 이룬다

독자마당 \_ QUIZ

책과의 만남 \_ 오픈리더십

문화산책 \_ 공연(CATS)

# Information

# 세계는 지금

##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존속 기간 조정 규정 개정 발표

지난 12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존속기간 조정(PTA)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1999년 개정된 미국발명자 보호법(AIPA)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의견 수렴 후 첫 번째 수정이다.

USPTO는 상대 외국 또는 국제출원서의 통지서뿐 아니라 USPTO의 통지서에 처음 인용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연방규정집 37 CFR §1.704(d)를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출원인은 미국 출원서 정보 인용 시 해당 정보가 USPTO에 적정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을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 허여통지서 발송 후 출원인이 즉시 정보개시서를 제출하였는데 USPTO가 다른 출원서에서 해당 목록을 인용한 경우, 또는 USPTO의 허여통지서 발송 후 출원인이 정보개시서의 심사통지서 사본을 즉시 제출하였는데 USPTO 또는 외국 특허청이 다른 출원서 혹은 해당 외국 출원서에서 해당 심사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USPTO는 PTA를 더 이상 줄이지 못한다.

37 C.F.R. §1.704(d)에 근거하여 상대국 출원서에 대한 외국 특허청 발행 통지서에서 인용된 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USPTO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해당

정보를 즉시 제출한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PTA를 줄일 수 없게 된다.

\* 즉시 제출이란 §1.704(d)에 따라 정보 수령 30일 이내를 의미함

출처 <http://www.patentdoc.org>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C社 v. Apple社 사건 재심사 예정

지난 12월 19일, 미국 경제지인 Bloomberg지는 대만 HTC社가 미국 Apple社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는 사건에 대해 ITC가 부분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11년 10월, ITC는 Apple社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HTC社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12월 16일, ITC는 문제의 특허 중 1개에 대한 비침해결정에 대하여만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Apple社가 HTC社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2010년 3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두 소송은 Apple社, HTC社, Motorola Mobility Holdings社, 삼성전자, Microsoft社와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싸

고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의 일부이다. Apple社와 HTC社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두 건의 소송이 ITC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HTC社가 자체 연구를 통하여 2006년 등록한 것으로 휴대폰의 작동 모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건에 대한 최종결정은 2012년 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ITC는 휴대폰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HTC社의 다른 3개 특허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건과 관련된 또 다른 2개의 특허는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하고, 이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한편, Apple社가 먼저 제기한 사건의 결과도 같은 날 ITC가 발표하였다. 이 건에 대해서는 Apple社가 주장한 HTC社의 침해가 인정되어 미국 내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

## 일본 특허청, 소리나 동작을 보호하는 상표법 개정 추진

지난 1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광고에 사용된 기업명의 「소리」나 로고

의 「동작」, 제품에 따라오는 마크의 「위치」 등을 보호하는 상표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는 등 자유무역의 흐름에 맞추어 지식재산의 보호에 더 노력한다는 취지이다.

JPO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하였다.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인터넷 보급과 함께 소리나 동작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상표제도가 신속히 정비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상표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표등록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호주 외에 아시아에서도 그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하면, 교섭 상대국은 상표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추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JPO는 그 전에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상표법에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인 형상」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광고 내에서 회사명이나 제품명의 음정

등 「소리」, 텔레비전·컴퓨터 화면 상에서 로고 마크의 「동작」, 제품의 「색채」, 제품에 붙여진 마크의 「위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나 형태가 바뀌는 「홀로그램」 등으로 할 방침이다.

출처 <http://www.nikkei.com>

## 일본 특허청,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절차 사례집 발표

지난 12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절차 사례집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여러 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와 산업계·노동계·대학 등으로부터 수집한 절차 사례 등을 특허제도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절차 사례집은 법안 입안자인 JPO가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관계자가 실제로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단, 법적 구속력은 없음)

차후, 새로운 직무발명제도가 시행된 후 발생하는 의문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례가 나올 경우 절차 사례집을 개정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jpo.go.jp>

##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유럽 단일특허법원 운영 관련 타협안 제시

지난 12월 6일, 유럽연합 경쟁력위원회(EU Competitiveness Council)는 유럽 단일특허법원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타협안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로 구성됨

- ① 항소법원, 특허중재센터, 제1심 법원의 중앙부서 의석
- ② 지방분과(local division)와 지역분과(regional division), 중앙부서(central division) 및 항소법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재정지원금: 유치 회원국은 필요 시설 및 장비와 초기 기간 동안 공무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③ 회원국의 기타 재정지원금: 단일 특허법원은 점차적으로 독립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균형과 투명한 방식의 초기 설립단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 ④ 소송 언어: 지역분과 소송절차 상의 언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됨이 원칙임. 그러나 양측은 편리성 및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장에게 언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⑤ 중앙 분과로의 회부: 이는 중앙분과의 역할 강화 및 회원국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피고가 EU 회원국 외에 거주할 경우에도 사건을 중앙분과로 가져갈 수 있음
- ⑥ 발효를 위한 비준수
- ⑦ 경과 기간(transitional period)

# 세계는 지금

⑧수정 조항: 조항들은 유럽 단일특허법원의 운영, 효율화, 비용 효율성 및 판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위원회 리뷰를 거쳐야 함

출처 <http://www.iam-magazine.com>

## 영국 지식재산청,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지원정책 발표

지난 12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정책은 영국 정부의 「성장을 위한 혁신 및 연구 전략」의 일환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를 통해 지식재산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이로써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이 지식재산 가치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관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자문관 교육」 실시
-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문관들을 빠르게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자문관 등록부」 운영
- 지식재산 관련 법률자문 및 상업적 자문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기업

체 및 IP 전문가들을 상대로 컨설팅

- 기술 전략 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를 통해 기업체에 무료로 지식재산 감사서비스 제공
- 효과적인 분쟁조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존 시스템 강화

출처 <http://www.ipo.gov.uk>

## 중국 선전시중급인민법원, iPad 상표관련 Apple社 패소 판결

지난 12월 6일, 중국 선전시중급인민법원(深圳市中级人民法院)은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와 Apple社 간의 iPad 상표 분쟁과 관련하여 Apple社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4월, Apple社는 선전웨이관社를 상대로 선전시중급인민법원에 iPad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선전웨이관社에게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중국에 등록된 iPad 상표는 Apple社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중국에서의 iPad 상표를 이용한 제품판매의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선전웨이관社는 2010년 Apple社의 소제기 당시 본래 타이완웨이관社는 iPad 상표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등록된 iPad 상표는 타

이완웨이관社와의 상표거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cnipr.com>

## 중국 변리사협회, 전자출원 및 전자출원 클라이언트 관리 시스템 교육 실시

지난 12월 5일, 중국 변리사협회는 최근 변리사를 대상으로 전자출원(CPC)과 전자출원 클라이언트 관리 시스템(EAC)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협회는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청두(成都), 선양(沈阳), 시안(西安), 지난(济南), 텐진(天津) 등 9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44개 도시의 327개 특허법무법인에서 675명의 변리사가 교육에 참여하였고, 특허법무법인에서 실제로 EA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EAC는 2010년 11월부터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5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이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함. 2012년 5월까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버전을 선보일 계획임

출처 <http://www.cipnews.com.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KIPO NEWS

##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내년부터 인하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국제특허출원료와 취급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PCT 국제특허출원료는 1,827,000원에서 1,716,000원으로 111,000원, 취급료는 275,000원에서 258,000원으로 17,000원 인하된다. 이는 WIPO PCT 총회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이다. 국제특허출원료는 올해 1,535,000원에서 1,827,000원으로 4회에 걸쳐 인상된 바 있다.

PCT 국제특허출원료와 취급료는 WIPO에 내는 것으로 WIPO가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그 기준금액은 국제특허출원료가 1,330 스위스프랑, 취급료는 200 스위스프랑이며, 국내출원인은 이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 한·중·일 3국간 특허 받기 쉬워진다

특허청은 지난 12월 15(목)~16(금) 이틀 동안 경주에서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과 제11차 한·중·일 특허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와이 요시유키(IWAI Yoshiyuki(岩井良行))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체결과 동시에 곧바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해주는 제도

## 특허청,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 '대성황'

특허청은 지난 12월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학·공공연 및 R&D 전담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노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3일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 홈페이지(www.e-note.or.kr)를 통해 사전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접수 당일부터 참가 신청이 몰려 3일 만에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연구노트의 활용촉진 및 연구자들의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60여 개 대학·공공연, 100여 개

기업체 등 2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노트의 법적 효력, 연구노트 활용 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자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자문위원회 이원용 교수(연세대)는 "최근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지침 수립이 의무화<sup>1)</sup> 되는 등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정보공유의 장이 없었던 만큼 이번 행사가 국내 연구노트 작성문화 정착 및 활성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호 제1항15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특허청-금융결제원 간 업무 협약 체결

특허청과 금융결제원은 국내 금융·

# KIPO NEWS

지급결제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22일, 특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금융권의 특허담당자 교육 지원, 금융·지급결제 관련 특허정보 제공, 특허맵 작성 및 표준특허 발굴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금융결제원은 기술동향 정보, 금융권 특허 동향, 금융분야 국제 기술표준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 특허청, 중소기업 CEO 특허 교육 쉬워진다

특허청은 바쁜 중소기업 CEO가 온라인 콘텐츠로도 특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포털』사이트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곳곳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콘텐츠만 보면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표준특허』나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는 중소기업 CEO와 연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연구원들이 실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3개와 청소년이 특허를 권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개발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인 『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는 고등학생(영마에)이 체계적인 특허교육을 받고 청년기업가로 성공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 전략』 『중소기업의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 등 새로운 지식재산 동향을 동영상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 특허등록신청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앞으로 특허등록신청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특허등록에 관한 첨부 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완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특허등록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완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정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불수리되어 신청인이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한다. 또한, 처음 등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날에 권리가 등록되므로 등록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마다 별개로 존재했던 등록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권리마다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특허청은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지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

마트 오피스를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재택근무지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스마트 오피스란,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IT 기반 사무실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업무생산성, 육아문제 등의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특허청의 경우 네트워크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 오피스와 실질적인 업무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재택 근무자들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작성하던 문서 등을 재택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여서 업무환경을 개인 스마트 오피스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보안성이 확보되어 있고, 별도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재택 근무지에 저비용·고효율의 자체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스마트 오피스의 구축은 올해 개통 예정인 3세대 특허넷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적용되는 SBC(Server Based Computing : 서버기반컴퓨팅)를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SBC 기반의 시스템 구축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또는 일부 업무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된 경우는 있었으나,

업무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 〈 용어 설명 〉

- ◆ SBC(Server Based Computing : 서버기반컴퓨팅) : SBC는 모든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저장 및 실행이 원격지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개인 PC에서는 실행된 화면만 볼 수 있도록 구현된 최신 컴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 ◆ SBC 장점 및 구축 현황 : SBC를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 PC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고, 모든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집중 관리하여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되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어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서류 보는 심판’에서 ‘당사자 말을 듣는 심판’으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판절차 진행 시 당사자 간의 주장을 듣는 구술(口述)심리<sup>1)</sup>가 심판 당사자

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서류 중심으로 하는 서면심리 방식’을 채택하여 심판을 운영해왔으나, 당사자의 주장이 심판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결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2년 전부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6년 특허심판 절차에 구술심리를 도입한 후 그해 123건이었던 구술심리가 지난해 647건으로 5년간 연평균 51%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11월말까지 704건이 열렸다.

구술심리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또는 심판관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도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해 심판정<sup>2)</sup>을 확충하고 속기사 등 심판 관련 인력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인 때문이다.

1) 법원의 ‘변론’에 대응되는 절차

2) 법원의 ‘재판정’에 대응되는 구술심리가 개최되는 장소

# KIPO NEWS

## 군 사병, 특허수수료 100% 면제받는다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병은 특허출원료를 100% 면제받게 된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군복무를 수행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군복무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일부 젊은 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병역이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은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군 사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발명·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 전환복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현역병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것

## 위조상품 단속, 제보에서 수사까지 스마트하게!

특허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단속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수사시스템은 온라인 제보를 위한 위조상품 제보센터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사관들의 공조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사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조상품 제보에서부터 수사진행 및 압수물관리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표준화하여 동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위조상품 제보센터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제보뿐만 아니라 상표권자가 정품정보와 위조상품에 대한 구별법을 등록할 수 있어서, 수사관들의 현장 단속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특허청



# KIPA NEWS



## 2012년 시무식 개최

우리회는 지난 1월 2일 오전,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 시무식을 가졌다.

전 직원은 '우리회 사명·비전·핵심가치'를 낭독하고, 이어 최종협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통이나 관습에 매이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최 부회장은 "우리회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회 사명·비전·핵심가치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회가 38년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개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1년 송년의 밤을 보내며

임·직원 서로의 노고 격려, 부문별 표창도



우리회는 지난 12월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준비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인재상에 선정된 신광식 과장 등 12명에게 우리회 회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양진수 계장 등 3명에게 창의인재상을, 최화봉 과장 등 5명에게 고객지향인재상을, 현우열 주임 등 2명에게 우수봉사활동상을 시상하였다.

성과관리T/F팀 등 3개 팀과 (주)삼진 안전시스템 반장 임정자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비전상과 모범옹역지원상을 시상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종협 부회장과 김현태 노조위원장의 송년사 및 카르테 오페라단(정통 오페라단)·까르페디엠 공연(직원밴드), 행원권 추첨 등 전 직원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2011년 한 해를 마무리 했다.

# KIPA NEWS



## 글로벌 특허전쟁, 인재육성으로 대비한다

2011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 열어

**대**학의 특허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올해 수상자가 99개 대학 3천200여 팀, 4천300여 명의 열띤 경쟁 속에 선정되었다.

우리회는 지난 12월 1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1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산대 팀(최치훈·김민수·최준우)이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팀(유승목·임채민·박지수)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공동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최치훈 씨(부산대)는 특허전략 수립부문과 선행기술 조사부문 모두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지도교수상은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팀을 지도한 한국기술교육대 조을룡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 수상 팀을 지도한 부산대 남일구 교수 등 6명이 수상하였다. 한편, 최다 수상 대학상은 경기대가 차지하였다. 서울대와 경희대는 특허전략수립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경기대는 선행기술조사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최다 응모 대학상은 3년 연속 인하대가 수상하였으며, 연세대는 2위를 차지하였다.

2008년 이후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이 문제출제와 심사를 담당하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미래 특허 획득 전략을 제시하는 산학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 제16회 CIPO 조찬세미나 개최

**우**리회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7시,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제16회 CIPO(지식재산최고책임자)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 및 최종협 부회장을 비롯, 기업임원 등 총 66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 안승호 부사장(KINPA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온 중국야금그룹 과학기술발전부 LIU ZUOXIN(劉作信) 부장은 중국 야금그룹의 특허전략과 중국 정부의 특허출원 추진정책 및 중국 지식재산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CIPO 조찬세미나는 매년 정기적인 모임(격월)을 갖는 행사로, 기업 경영진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IP 경영 확산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 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에 자가검사 가능한 'PC기반 녹내장 검사시스템'

**트** 허청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우리회(주)가 주관한 「2011 대학창의발명대회 시상식」이 지난 12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의 122개 대학에서 2,360건의 발명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는 수상작 34점을 발표하며, 'PC기반 녹내장 검사시스템'을 발명한 포항공과대학교 이백희 · 이지형 팀에게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안겨주었다.

이 발명은 PC용 진단프로그램과 탈부착식 차광장치 등 간단한 장비로 구성되어 시력을 검사하듯이 시신경 손상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이 발명은 기존의 전문 녹내장 진단장비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녹내장을 조기에 선별 검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상인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상은 여러 모양의 구멍이 뚫린 블록을 서로 연결하고, 그 홀에 불을 넣어서 지정된 한 방향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블록의 홀 이어가기 3D퍼즐'을 발명한 성균관대학교 김현식 · 박효진 · 임종민 팀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클릭 버튼을 이용한 터치스크린 입력장치'를 발명한 KAIST 황성재, '내부회로와 소켓 간의 연결 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LED소켓'을 발명한 동의과학대학 손혁진 군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4개 대학의 34개 팀이 우수발명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이상의 수상발명을 지도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지도교수상은 국무총리상 수상 팀을 지도한 포항공대의 유희천 교수를 비롯한 8명이 받았다. 또한 우수 대학발명동아리에 수여하는 발명동아리상은 성균관대학교 발명동아리 '기상천외'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10개의 대학발명동아리가 수상했다.

###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에 낙생고 서재홍 교사 선정

2011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시상식 열어



**우** 리회는 발명교육에 공헌한 현직 교원 7명을 '201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2월 13일 충남 덕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재홍(경기 낙생고) 교사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금상에는 이주호(대전 탄방중) 교사가, 은상에는 박상필(경기 경화여중) 교사가, 동상에는 전종호(대구 강북중) · 김동하(대전 충남고) · 장종길(부산 내성초) 교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관리자 분야에서는 김병호 서울 양진중 교장이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자인 서재홍 교사는 발명 교실과 발명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등 발명교육에 남다른 애정으로 학생을 지도, 낙생고를 명문학교로 부상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에 헌신하는 교원을 발굴 · 시상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KIPA NEWS



## 2011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수상에 박희철, 류영복 씨 수상

○ 리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 9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2011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외부공모 부문 우수상에 박희철, 류영복 씨가 각각 수상했다.

우리회 최중협 부회장은 이날 공모전에서 ‘발명장려’, ‘특허기술활용’, ‘창의인재육성’, ‘기타’ 등 4개 부문에 대해 총 10명의 수상자에게 시상하였다.

최 부회장은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정책 발굴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것이다”며, “선정된 사업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2011 IP경영 컨퍼런스 개최



○ 리회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선도기업 캐치-업(catch-up)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7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1 IP 경영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IP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선도 기업을 따라잡기 위한 이론이 소개된 후, 사례 등을 활용한 IP 경영의 세부 실천전략이 제시되었다.

기조연설에는 기업 경영 및 IP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와 삼성 모바일디스플레이 김광준 전무가, 주제 발표에는 NHN(주) 윤여선 실장, 최정국제 특허 정우성 대표변리사, (주)네모파트너즈 강진우 팀장이 선도 기업 추격을 위한 중소기업의 IP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한신대학교 성웅현 교수의 주제로 '선도기업 추격을 위한 IP 경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화두로 자유로운 토론을 가졌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IP경영 컨퍼런스'는 올해가 세 번째 개최되며, IP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 2011 IP-BIZ 이터닝 워크숍 개최

○ 리회는 기업체 간 교육운영 경험 및 방법을 공유하고 이터닝 교육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11 IP-BIZ 이터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IP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관)의 부서장 및 실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회는 '11년 지식재산 이터닝 사업성과 및 신규개발 콘텐츠 소개하고, 지식재산 이터닝 우수 기업(현대자동차 등)에 대한 포상을 하였다.

이어, 케피코·참농원·청호컴넷·운화(4개 기업)는 지식재산 이터닝 운영 우수사례·IP리더양성교육 체험수기·특허역량 심화교육 운영사례 등을 발표하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과 창조경영·미래인재와 스마트 러닝·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기법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이터닝 관련 외부 특강이 이어졌다. 각 기업 및 단체들은 6개 조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하며 교육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협 부회장은 "중소기업 IP리더 양성교육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식재산 관리역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사업으로서, 올해 750명을 배출하였고, 내년부터 1,100명으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5천명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단 신

### 2012년 국내 첫 공식강의 주제는 '발명과 특허'

2012년 국내 첫 공식 강의의 주제는 '발명과 특허'였다.

강사는 우리회 전 이사 대우였던 왕 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겸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왕 소장은 지난 1월 1일 13시부터 14시 20분까지 경인교육대학교 미래인재연구소와 창의인성연구소가 주최한 경기·인천지역 초·중학생 영재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2012년 R-STEAM 융합영재 캠프'(로봇을 이용한 융합 리터러시 신장프로젝트)에서 '발명과 특허'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했다.

\* 발명이란 무엇인가?

학생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발명이론 '발명의 10계명'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왕 소장의 새해 첫 강의는 왕 소장이 2012년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발명애니메이션과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첫 선을 보여 수강 학생은 물론 참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 # Muju 전라북도



#### 무주사과

무주사과는 다른 사과 주산지보다 생산량은 다소 적으나 고랭지 사과의 희소성과 무주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의 이미지가 합쳐져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 상표명 |  
무주사과

| 권리자 |  
무주과수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42호

| 상품분류 |  
제 31류 사과(신선한 것)

연락처  
무주과수 영농조합법인  
063-324-2011~2



#### 1/ 유래

무주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고랭지농업이 발달하였는데, 사과재배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부터는 무풍면 증산리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무주읍, 안성면 일대를 비롯하여 무주군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2/ 특성

무주지역은 우리나라 남부내륙지방의 소백·노령산맥 지역으로 대부분의 경작지는 준고랭지에 형성되어 있어 고랭지사과의 생산이 가능한데, 고랭지지역은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서늘하여 병충해의 발생이 적어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안전한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지역은 사과재배에 알맞은 표토성분인 사양토~양토의 비율이 높고 토양의 통기성, 보수력이 뛰어나 뿌리의 신장과 양·수분의 흡수가 이로워 사과재배에 매우 알맞다.

## # Cheonan 충청남도



### 천안호두

호두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먹는 부스럼 과실로 유명하며 특히 천안호두는 품질이 우수해서 명성이 자자했는데 호두모양의 과자와 함께 천안의 특산물 중 으뜸으로 맛있다.



| 상표명 |  
천안호두

| 권리자 |  
천안명물호두 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30호

| 상품분류 |  
제 31류 호두(신선한 것)

연락처  
천안시 공원산림과  
041-521-5522



#### 1/ 유래

중국 사상 최초로 서역 교통을 개척한 한나라의 여행가 장건이 이를 중국에 전파하였고 이를 고려말 역신이었던 유청신이 1320년경에 우리나라에 들여와 지금의 천안 광덕산에 시재한 것이 우리나라 호두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400 ~ 500년 된 호두나무가 있어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2/ 특성

호두는 과육 안에 단단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핵을 먹는데 진해, 자양강장제로 사용하고 동상, 옴, 피부염과 허리, 무릎을 따스하게 하며 담백 고소한 맛이 뛰어나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생식하거나 약용, 과자 제조용, 기름을 채취하는 데 사용된다. 천안은 호두와 호두가 들어간 호두모양의 호두과자로 유명하다.

## 건강한 다이어트로 새해소망 이룬다

새해 소망 중 단연 1위는 '다이어트'. 건강에 좋지 않을뿐더러 요즘같이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에 대해 자기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인에게 필수가 되어버린 다이어트, 해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올 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요.” 연초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며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잦은 술자리와 송년모임으로 자칫 방심했던 사이에 체중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해가 바뀔 때마다 희망사항 1순위로 꼽히지만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이어트는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꾸준한 운동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병의 근원, 비만

최근 남성들의 비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비만하다는 것은 외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더 심각한 문제다.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피부질환,

김소형  
한의학 박사



관절질환, 월경이상, 여성의 불임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비만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복부비만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다. 성인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뱃살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오는 나잇살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복부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특히 술자리가 잦은 중년 남성들이 주로 기름진 안주를 먹는 것 또한 늘어지는 뱃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복부비만을 위의 기능이 불균형하거나 장에 숙변이 많이 쌓여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체중과 체지방을 줄여나가야 한다. 더불어 40대 이후에는 체력이 약하므로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대신 운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복부비만이 주로 남성들에게 나타난다면 허벅지나 팔, 다리, 엉덩이 부분에 지방이 분포하는 사지형 비만은 여성들의 고민거리다. 비만은 여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데, 불규칙한 생리에서부터 수족냉증, 부종, 피부 트러블, 임신중독증, 불임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최근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모뿐 아니라 몸매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 여성들의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으로까지 확대되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일명 ‘코끼리 다리’로 비유되는 하체비만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 볼 때 하체가 튼실한 사람은 대개 기(氣)와 소화기능이 약해 비만이 오게 된다. 몸의 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의 대사가 늦어지면 몸이 붓고 노폐

물이 싸여서 비만이 되기도 하며, 먹는 양이 적어도 아랫배가 차서 장 기능이 약해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아 살이 찌기도 한다. 또 많은 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거나 운동 부족일 경우 허벅지가 굵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흡수 시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는데,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해조류를 섭취하고, 채소는 삶아서 데쳐 먹는 게 좋다. 또 하체 부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관건인데, 엉덩이 아래 주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승부혈을 지압해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허벅지에 뭉친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 몸 안의 독소가 살을 찌운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비습(肥濕 : 지방과 수분) 혹은 담음(痰飲 : 기혈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노폐물)의 과잉 축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몸의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조화롭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몸 안의 노폐물, 즉 독소이다. 따라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몸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기혈순환이 개선되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게다가 해독 과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이 증강되면서 두통, 만성피로, 변비 등 고질적인 증상이 사라지고 여드름이나 기미와 같은 피부 트러블도 완화된다는. 이처럼 독소를 제거하는 데톡스(Detox) 다이어트는 건강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동시에 찾아준다.

몸을 해독한다고 하면 언뜻 기계적·화학적 시술을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독소를 유발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담배, 알코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등으로 인체의 순환을 증진시켜 독소의 체외배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장은 독소가 빠져나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대장을 해독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정화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하수도가 막히면 오물이 다시 역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장해독은 데톡스 다이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장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정수된 물을 하루 1.5~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준다.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마셔야 한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식이요법도 중요하다. 식사는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을 섭취해야 인체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독소가 잘 쌓이지 않는다. 만약 소식과 과식을 반복하게 되면 인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충분한 양만큼 얻을 수 없어 자꾸 저장하려고 들어 살이 찌기 쉽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는 간식을 삼가는 게 좋지만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우유, 감자, 과일 등을 소량 섭취



하여 공복을 달래주면 좋다. 하루 세끼 식단에는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 섭취해주고, 백미 대신 보리밥, 발아현미밥, 검은콩밥 등으로 대체하여 칼로리를 낮춘다. 또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해조류, 양파, 마늘, 브로콜리, 토마토, 발효식품과 같은 데톡스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이요법으로 체내의 독소를 제거했다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의 순환을 증진시켜주도록 하자. 걷기, 달리기, 수영, 줄넘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류개선에 도움을 주고, 체지방을 줄이는 동시에 적정 체성분을 유지해주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해 노화와 질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폭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고, 점차 강도를 높여도록 한다.

다이어트로 인해 지치고 피로가 쌓인다면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반신욕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면 몸의 세포기능과 활력을 회복하여 면역계가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각 장기의 기능이 개선되어 기의 흐름도 원활해져 살이 빠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로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는 없다.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는 요요현상을 초래할 뿐이며,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흐트러진 생활과 과식, 운동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살은 다시 찌기 마련이다. 따라서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며,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2012. 1 |

## 독자마당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 QUIZ

1.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로서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발효와 부패에 관한 연구를 했던 인물은?
2. 우리눈의 330배나 되는 방사능물질 플로늄에 이어 발견된 새로운 방사선 물질이며, 라틴어로 광선을 뜻하는 물질은?
3.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5년 12월 23일 발표한, 중력을 상대론적으로 다루는 물리 이론은?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의견

- ▶ 이상일 독자 \_ 저는 현재 자동차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특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특허"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특히, 리포트 부분은 지식재산 전문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 김의정 독자 \_ 이번 호에는 글로벌 특허분쟁, 전쟁, 소송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 인 듯합니다. 매월 '발명특허'를 통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 이수미 독자 \_ 매월 발명특허를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평소 상표관련의 글을 주로 읽으나, 이번 호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을 통해 본 디자인권 보호의 양면성", 그리고 "어린이 그림책 <달사베트> 걸그룹 이름으로 도용되다"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책 제목이 발명특허이니 만큼 발명특허와 관련된 만화도 있으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 12월호 퀴즈 정답

1. 알파인스타일등반
2. 태양폭풍
3. 청룡영화상

## 퀴즈 정답자

- 이상일**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김의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수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책과의 만남

## 오픈리더십

### 셸린 리(Charlene Li)

저자 셸린 리(Charlene Li)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 부사장을 역임하고, 경영 전략 컨설팅 기업 알티미터그룹(Altimeter Group)을 창립해 리더십·경영전략·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서 소셜 컴퓨팅과 웹 2.0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내온 그녀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로 자주 인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USA투데이>, <ABC뉴스>, <CNN>의 단골 컬럼니스트와 패널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조시 버노프(Josh Bernoff)와의 공저로 <그라운드스웰>이 있다.

### 기득권과 통제를 포기한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

소셜 테크놀로지가 촉발시킨 개방의 물결 속에서 개인과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오픈 리더십』. 이 책은 전작 <그라운드스웰(Groundswell)>을 통해 비즈니스와 소셜 테크놀로지의 결합 및 기업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던 저자 셸린 리가 소통과 조화를 기치로 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인 '오픈 리더십'을 제시한 것이다. 오픈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오픈 리더를 원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조직 성향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즉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픈 리더를 발굴·양성하는 방법도 빠짐없이 설명한다. 더불어 조직이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리스크 극복 방안도 모색한다.



저 자\_ 셸린 리  
출판사\_ 한국경제신문사



공연

## 뮤지컬 캣츠(Musical CATS)

2012. 1. 13 ~ 2012. 1. 22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뮤지컬!

세계4대 뮤지컬, 30주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더욱더 환상적인  
무대로 돌아온 뮤지컬 캣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고양이들의 아름다운 축제!

'세계적인 기량'으로 극찬받은 한국 초연 배우들  
과 최정상의 디바 인순이, 박해미, 홍지민으로  
이루어진 화제의 캐스팅!



객석 사이를 누비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개성 강  
한 35마리의 고양이, 발레부터 아크로바틱까지 다  
채롭게 펼쳐지는 화려한 쇼,  
마법과도 같은 환상적인 무대와 불멸의 명곡 '메모리'의 감동  
3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무대와 함께 하세요.



공연장소 : 부산 시민회관(대극장)  
공연기간 : 2012. 1. 13 ~ 2012. 1. 22  
관람시간 : 160분  
기획사 : (주)월드쇼마케팅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아이디어가 선풍타격이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의 사업안내

##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